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보험료율 산정 시 할증 제한 등〉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412호)
- 문대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453호)
- 송옥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618호)
- 어기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624호)
- 이원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167호)
- 박수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479호)

2025. 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 용 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1.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412호)	1
2. 문대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453호)	1
3. 송옥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618호)	1
4. 어기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624호)	1
5. 이원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167호)	2
6. 박수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479호)	2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3
1.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412호)	3
2. 문대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453호)	5
3. 송옥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618호)	7
4. 어기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624호)	9
5. 이원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167호)	10
6. 박수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479호)	12

Ⅲ. 개정안 관련 국회 심사 경과	14
Ⅳ. 6건의 개정안 비교	17
Ⅴ. 검토의견	18
1. 농어업재해의 정의 변경	18
2. 기본계획 수립 주기 단축 및 포함 사항 추가 등	24
3. 실태조사 근거 마련	32
4. 심의회 심의사항 확대	38
5. 기후위기 전문위원회 설치 등	45
6. 보험료율 산정 시 할증 제한 기준 도입	52
7. 손해평가인의 교육 내용 구체화 등	66
8. 손해평가 결과 이의신청 시 보험가입자의 손해평가사 교체 요구 수용 근거 마련	69
9. 보험목적물 범위 확대 노력 등	74
10. 신규 보험상품 개발에 대한 지원근거 명확화 등	78
11. 정부 및 지자체의 보험료 의무 지원비율 명문화	81
12. 전담기관의 지정·운영	88
13. 부칙	93
[참고자료]	95

I. 제안경위

1.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412호)

가. 제 안 자 : 윤준병의원 등 13인

나. 제 안 일 : 2025. 3. 27.

다. 회 부 일 : 2025. 3. 28.

2. 문대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453호)

가. 제 안 자 : 문대림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5. 3. 28.

다. 회 부 일 : 2025. 3. 31.

3. 송옥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618호)

가. 제 안 자 : 송옥주의원 등 12인

나. 제 안 일 : 2025. 4. 7.

다. 회 부 일 : 2025. 4. 8.

4. 어기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624호)

가. 제 안 자 : 어기구의원 등 11인

나. 제 안 일 : 2025. 4. 7.

다. 회 부 일 : 2025. 4. 8.

5. 이원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167호)

가. 제 안 자 : 어기구의원 등 11인

나. 제 안 일 : 2025. 4. 28.

다. 회 부 일 : 2025. 4. 29.

6. 박수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479호)

가. 제 안 자 : 박수현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5. 5. 12.

다. 회 부 일 : 2025. 5.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412호)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농어업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여 농어업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2001년 제정되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재해가 급증하며 농가 및 어가의 경영위기에 더욱 취약해지고 있는 상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기준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은 전체농가의 52.1%에 그치고 있으며,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지면적도 전체 경지면적의 42.1%에 불과해 농어업재해보험이 도입된지 2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재해보험의 사각지대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자연재해 빈도 증가에 따라 보상률을 하향하거나 농어민의 과실과 관계없이 손해 할증률을 상향하는 등 재해 피해 책임을 농어업인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현행 제도상의 문제를 개선하고,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시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고 보험목적물의 범위를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본계획에 재해보험의 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농어업재해보험심의회 심의사항에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보험 목적물의 확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손해평가인에게 농어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대한 품종, 재배방식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손해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예측 불가능한 재해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는 할증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되, 10년 빈도 이하의 재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농업인이 피해경감 노력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할증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현행 재해보험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의 변경 근거를 마련하고 재해보험의 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의2).
- 나.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심의사항에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보험 목적물의 확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3조제1항제2호).
- 다.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심의 시 농림축산업인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함(안 제3조제7항).
- 라.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료를 산정 시 예측 불가능한 재해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는 할증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10년 빈도 이하의 재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농업인이 피해경감 노력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할증을 적용함(안 제9조제2항 신설).
- 마. 손해평가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연 1회 이상 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의 품종, 재배방식 등의 내용으로 정기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손해평가에 대한 검증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제5항 및 제7항).

바. 보험가입자는 재해보험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손해평가사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8제1항 후단 신설).

2. 문대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453호)

제안이유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농어업 부문에서의 피해가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음. 또한, 재해의 유형이 다양화됨에 따라 농어가의 경영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농어업 생산기반의 약화로 이어져 국가 식량안보 및 농어촌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농어가가 재해 발생 시 안정적으로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01년부터 농어업재해보험 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제도 시행 20년이 경과한 현재에도 보험 가입률이 전체 농가의 52.1%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가입된 경지면적 또한 전체 경지면적의 42.1%에 불과한 실정임. 특히 기후위기로 인한 재해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기존 보험제도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

고 있음.

이에 재해보험의 상품 개발과 관련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여 보다 다양한 위험요소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재해보험심의회 심의 대상에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보험 목적물의 확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현실적인 피해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손해평가인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대한 품종, 재배방식 등에 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손해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며, 재해보험사업자가 보험료를 산정할 때 거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이유로 보험료 할증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농어업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농어가 보다 안정적인 경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해보험 기본계획에 보험 대상 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의2제2항제3호).

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농어업 재해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의3 신설).

다. 농업재해보험심의회 심의사항에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보험 목적물의 확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심의 시 농림축산업인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3조제7항).

라. 정부는 매년 보험목적물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안 제5조제2항).

마.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료를 산정할 때 거대 자연재해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농어업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한 할증
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안 제9조제2항 신설).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손해평가와 손해평가
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농어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의 품종, 재
배방식 등의 내용으로 정기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안
제11조제5항).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공정하고 객관
적인 손해평가를 위하여 손해평가에 대한 검증조사를 실시할 수 있
도록 함(안 제11조제7항).

아. 보험가입자는 당초 손해평가를 담당하였던 손해평가인과 손해평가
손해사정사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재해보험사업자는 특
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11조의8제1항).

자. 정부는 농어업인에 대하여 재해보험 가입 촉진과 재해대책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를 하도록 함(안 제28조).

3. 송옥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618호)

제안이유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현상으로 폭염, 한파, 집중호우 등 이상기상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농어업재해의 심각성과 피해가 확대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높은 자기부담 비율과 좁은 손해보장 범위 등으로 현장 농어업인의 만족도가 높지 않은 상황임. 또한 보험목적물에 대한 손해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보험가입자의 비판적인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재해보험의 지원·평가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업재해보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재해를 대비하기 위한 기후위기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제도를 정비하여 농어업인 경영안정과 생산성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업재해 중 병충해에 기후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병해충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병충해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1호).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함(안 제2조의3 신설).

다.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농업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효

울적인 재해보험 정책 수립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기후위기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 평가를 위하여 손해평가에 대한 검증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7항 신설).

마. 정부는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8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19조제1항).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실태조사, 통계의 작성, 손해평가 검증조사 등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26조의2 신설).

4. 어기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624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작물·임산물·가축 및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 등을 농업재해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자연재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일조량(日照量) 부족 현상이 자연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보험료율을 행정구역, 권역 단위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농어가에서도 보험료가 상

승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개선의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또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도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일조량 부족을 농업재해에 명시하고, 재해보험사업자로 하여금 보험료율의 산정에 있어 부당한 보험료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0 이상을 각각 지원하게 함으로써 농어가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9조제3항 신설 및 제19조제1항).

5. 이원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167호)

제안이유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재해가 급증하며 농어업·농어촌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음. 이러한 농어업 재해 발생 시 농어가의 경영안정과 농어업의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이 지난 2001년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2024년 기준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은 대상면적 대비 54.4%에 불과하며, 2023년 대비 2.3% 포인트 상승하는데 그쳤음. 농어업재해보험이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재해보험의 사각지대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험료를

을 할증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있음.

이에 기본계획에 재해보험의 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심의사항에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보험 목적물의 확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손해평가인에게 농어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대한 품종, 재배방식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손해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료율 산정 시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 또는 거대재해로 인한 피해에 따른 할증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농어업인의 피해경감 노력 불이행에 따른 할증은 제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재해보험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의 변경 근거를 마련하고 재해보험의 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의2).

나.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심의사항에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보험 목적물의 확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3조제1항제2호).

다.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심의 시 농림축산업인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함(안 제3조제7항).

라. 정부는 재해보험과 재해대책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험 가입자에게 교육·홍보를 하여야 함(안 제7조의2 신설).

마.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료율 산정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 또는 거대재해로 인한 피해에 따른 할증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농어업인의 피해경감 노력 불이행에 따른 할

증은 제외함(안 제9조제2항 신설).

바. 손해평가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연 1회 이상 농어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의 품종, 재배방식 등의 내용으로 정기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손해평가에 대한 검증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제5항 및 제7항).

사. 보험가입자는 재해보험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손해평가사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의8 후단 신설).

6. 박수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479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재해보험(이하 “재해보험”이라 함)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자연재해와 이상기후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에도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는 5년으로, 비교적 장기로 규정되어 있어 농어업재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빈번한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농가 및 어가는 경영위기에 더욱 취약해지고 있는데, 재해보험의 목적물은 그 범위가 한정적이고 정부가 지원하는 재해보험료의 비율도 충분하지 않아 재해보험에 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확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및 제5조 등).

Ⅲ. 개정안 관련 국회 심사 경과

1.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안(대안)」의 심사 경과

6건의 개정안을 검토하기에 앞서 해당 개정안과 관련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안(대안)」에 대한 22대 국회 심사 경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우리위원회는 지난 2024년 11월 21일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안번호 2200116) 등 총 7건의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위원회 대안을 제시하기로 의결하였음.

동 대안은 「국회법」 제57조의2제1항¹⁾에 따른 안전조정위원회 구성 요구가 있음에 따라 소위원회 의결 당일 안전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쳤으며, 마찬가지로 같은 날 제9차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음.²⁾

1) 「국회법」 제57조의2(안전조정위원회) ① 위원회는 이건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전(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및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심사하기 위하여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전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해당 안전을 제58조 제1항에 따른 대체토론(大體討論)이 끝난 후 조정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조정위원회를 거친 안전에 대해서는 그 심사를 위한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

2) 2024년 11월 21일(목) 회의 진행 경과

① 2024년 11월 21일,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측(차관)은 참석하였으나 일부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3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음(10시 11분 개의, 19시 13분 산회)
② 2024년 11월 21일,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였으나, 「국회법」 제57조의2에 따른 안전조정위원회 요구서가 제출되어, 대안이 안전조정위원회로 회부됨(20시 16분 개의, 20시 46분 정회)
③ 2024년 11월 21일, 제418회 국회(정기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안전조정위원회에서 대안을 안전조정위원회의 조정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음(21시 45분 개의, 23시 36분 산회)
④ 2024년 11월 21일,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정부측(장관)은 참석하였으나 일부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안전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인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음(23시 40분 속개, 23시 58분 산회).

이를 통해 마련된 대안(의안번호 2205975)은 2024년 11월 28일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으나, 2024년 12월 19일에 「대한민국헌법」 제53조³⁾에 따른 재의요구서가 제출되었고, 2025년 1월 8일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됨.

【 종전 「양곡관리법」 개정안 및 대안 심사이력 】

구분		의안 번호	대표발의자 /제안자	제안일	위원회 회부일	심사결과		
						위원회	본회의	재의결
일 부 개 정 법 률 안	1	2200116	윤준병의원	24. 6. 4	24. 6. 11.	대안반영폐기 24. 11. 21.	대안반영폐기 24. 11. 28.	-
	2	2202031	박수현의원	24. 7. 19	24. 7. 22.			
	3	2202062	서삼석의원	24. 7. 22	24. 7. 23.			
	4	2202114	이원택의원	24. 7. 22	24. 7. 23.			
	5	2202121	여기구의원	24. 7. 23	24. 7. 24.			
	6	2202319	송옥주의원	24. 7. 29	24. 7. 30.			
	7	2204604	항명선의의원	24. 10. 8	24. 10. 10.			
대안	2205978	농해수위 위원장	24. 11. 27.	-	(대안가결) (24. 11. 21.)	원안가결 24. 11. 28.	부결 25. 1. 8.	

※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작성, 2025.6.

- 3) 「대한민국헌법」 제53조 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 ②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 ③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 ④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 ⑤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 ⑥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 ⑦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2. 대안의 주요내용⁴⁾

- 가.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의 변경 근거를 마련하고 재해보험의 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의2).
- 나.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심의사항에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보험 목적물의 확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3조제1항제2호).
- 다.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심의 시 농림축산업인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함(안 제3조제7항).
- 라. 정부는 재해보험과 재해대책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에게 교육·홍보를 하여야 함(안 제7조의2 신설).
- 마.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료를 산정 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따른 할증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농어업인의 피해경감 노력 불이행에 따른 할증은 제외함(안 제9조제2항 신설).
- 바. 손해평가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연 1회 이상 농어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의 품종, 재배방식 등의 내용으로 정기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손해평가에 대한 검증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제5항 및 제7항).
- 사. 보험가입자는 재해보험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손해평가사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의8 후단 신설).

4) 참고로, 동 대안은 재해보험사업자의 보험료를 산정 시 할증을 제한하는 내용의 안 제9조제2항을 제외하고는 이견 없이 처리되었으나, 안 제9조제2항에 대하여 보험료를 산정 시 자연재해 피해에 따른 할증을 제한하는 경우 보험회사의 재무건정성 악화 등에 의한 농어업재해보험의 지속가능한 운영이 어렵고,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저해 및 이로 인한 갈등 야기 등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국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사유로 재의요구되었음.

IV. 6건의 개정안 비교

개정안을 검토하기에 앞서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안」의 내용을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음.

구분		윤준병의원	문대림의원	이원택의원	송옥주의원	여기구의원	박수현의원
재해 정의 (안 2조1항)					병충해의 정의 구체화	일조량 부족 추가	
기본 계획 (안 2조의2)	수립	변경 근거 마련					주기 단축 (5→3년)
	포함 사항	재해보험 상품 개발					산림청장 건의사항
	국회 보고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실태조사 (안 2조의3 신설)		기본계획·시행계획의 효과적 수립 등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연례적 실태조사 실시·공표 등		
심 의 회 (안 2조의3 등)	심의 사항	① 손해평가 방법에 피해율 산정 포함 ②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보험 목적물 확대					
	심의 절차	농림축산산업인단체 의견 청취 의무화					
기후위기 전문위원회 설치 등 (안 3조의2 신설)		-			기후위기 전문위원회 설치, 재해보험 목적물 및 재해의 범위 확대 등에 대한 의견 제시		
보상범위 (안 6조1항)					심의회 심의 거쳐 결정		
보험료율 산정 시 할증 제한 (안 9조)						부당한 보험료율 상승 방지 노력 의무	
손해 평가 (안 11조 등)	손해평가인	① 정기교육 내용의 구체화 ② 손해평가인력 전문성 제고 추가					
	검증조사	손해평가에 대한 검증조사 실시 근거 마련			실시 근거 마련		
	교체 요구	손해평가 결과 이의신청 시 손해평가사 교체 요구 권한 부여					
보험목적물 확대 노력 (안 5조2항 등)		매년 보험목적물 범위 확대 노력 의무 부여					보험목적물 간 형평성 고려 등
신규 보험상품 개발 (안 17조1항)		신규 보험상품 개발 시 시범사업 근거 명확화					
보험료 지원비율 명문화 (안 19조1항)					정부 80% 이상 의무	정부 80% 이상 의무 자자체 10% 이상 의무	정부 60% 이상 재량
전담기관 지정·운영 (안 6조의2 신설)			-		재해보험사업 지원·평가 업무 전담기관 지정		

V. 검토의견

1. 농어업재해의 정의 변경(안 제2조제1항)

송옥주의원안은 농어업재해 범위의 하나에 해당하는 병충해에 ‘기후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병해충⁵⁾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포함하도록 함.

여기구의원안은 농어업재해의 정의에 ‘일조량 부족’을 추가 규정함.

현행	송옥주의원안	여기구의원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	제2조(정의) ----- ----- -----.
1. “농어업재해”란 농작물·임산물·가축 및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 <u>병충해</u> ·조수해(鳥獸害)·질병 또는 화재(이하 “농업재해”라 한다)와 양식수산물 및 어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질병 또는 화재(이하 “어업재해”라 한다)를 말한다.	1. ----- ----- ----- ----- <u>병충해(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발생하는 병해충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병충해를 포함한다)</u> ----- ----- -----	1. ----- ----- ----- ----- <u>일조량(日照量) 부족·병충해</u> ----- ----- -----

5) 병해충은 병과 해충을 함께 지칭하는 용어이고, 병충해는 병과 해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의미하는 점에서 일부 차이가 있음.

현행	송옥주의원안	여기구의원안
2. "농어업재해보험"이란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3. ~ 6. (생략)	----- ----- ----- ----- ----- -----. 2. ~ 6. (현행과 같음)	

가.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1) 송옥주의원안 관련

현행법 제6조제1항, 시행령 제8조 및 별표 1에 따라 보험에서 보상하는 병충해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고시하고 있어 기존 조항과 중복되므로 개정이 불필요함.

또한,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병충해를 모두 재해보험으로 보상하는 경우 보험료의 급격한 인상 및 그로 인한 농업인 부담 증가 등 상품운영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음.

2) 여기구의원안 관련

‘일조량 부족’은 이미 자연재해의 범주 안에 포함되어 보험으로 보상하고 있어 개정 실익이 없음.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농업재해⁶⁾’를 농작물·임산물·가축 및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병충해·조수해(鳥獸害)·질병 또는 화재로 규정하고 있음.

송옥주·어기구의원안은 공통적으로 일부 자연재해를 농업재해의 정의에 명시하여 해당 재해로 인한 피해 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먼저, 송옥주의원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상의 빈번한 발생으로 농업재해의 심각성과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는 인식에 기반하여, 기후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병해충으로 발생하는 피해가 병충해에 포함됨을 명시하기 위해 구체적인 병충해의 범위를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서는 현재 농업재해의 범위는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시행령에서 고시로 단계적으로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어 병충해 범위만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현행 법령 체계와 부합하지 않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임.

즉, 현행법 제6조는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재해보험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그 범위를 [별표 1]로 정하도록 하며, 해당 별표는 병충해의 종류를

6) 어업재해도 같은 체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농업재해’를 중심으로 살펴봄. 최근 발생한 농업재해 현황은 참고자료1 참조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실제 재해보험에서 보험목적물별로 보상하는 병충해의 종류는 「농업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별 보상하는 병충해 및 질병규정」(농식품부고시)에 규정되어 있음.

【 병충해 등 범위 관련 규정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6조(보상의 범위 등) ①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해당 재해의 발생 빈도, 피해 정도 및 객관적인 손해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재해보험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정부는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8조(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

재해보험의 종류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
1. 농작물·임산물 재해보험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 및 보험목적물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병충해
2. 가축 재해보험	자연재해, 화재 및 보험목적물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후 략>

「농업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별 보상하는 병충해 및 질병규정」 제2조(보상하는 질병 및 병충해) 시행령 제8조에서 보험목적물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병충해 및 질병"이란 별표와 같다.

[별표 1] 보험목적물별 보상하는 병충해 및 질병(생략)

보험종류	보험목적물	구분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
농작물 재해 보험	벼	병해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도열병, 깨씨무늬병, 세균성벼알마름병
		충해	벼멸구, 먹노린재
	감자	병충해	감자에 관하여 발생하는 모든 병·해충
	고추	병충해	고추에 관하여 발생하는 모든 병·해충
	복숭아	병해	세균구멍병

다음으로, 여기구의원안은 ‘일조량 부족’이 자연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보아 이를 정의 규정에 명시하려는 것임.

이 법은 자연재해의 종류를 일일이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나, 「농어업재해대책법」⁷⁾에서 ‘농업재해’ 중 자연재해의 종류를 가뭄, 홍수, 호우,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 우박, 서리, 조수, 대설, 한파, 폭염, 황사, 일조량 부족 등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일조량 부족이 이 법상 자연재해의 종류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상 농업재해 비교 】

「농어업재해대책법」 상 농업재해(제2조제2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상 농업재해
가뭄, 홍수, 호우,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 우박, 서리, 조수, 대설, 한파, 폭염, 황사, 일조량 부족	자연재해
기타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	병충해
유해야생동물	조수해(鳥獸害)
-	질병 또는 화재

농식품부에 따르더라도 현재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피해는 자연재해로 인정되며,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를 타 재해 피해와 동일하게 보상하고 있음.

한편, 개정안은 ‘일조량 부족’을 자연재해와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의 제안이유에 따르면 일조량 부족을 자연재해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되는바, ‘일조량 부족’을 자연재해의 하나로

7)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란 농업재해와 어업재해를 말한다.
2. "농업재해"란 가뭄, 홍수, 호우(豪雨),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異常低溫), 우박, 서리, 조수(潮水), 대설(大雪), 한파(寒波), 폭염(暴炎), 황사(黃砂),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病害蟲), 일조량(日照量) 부족, 유해야생동물(「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유해야생동물을 말한다), 그 밖에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말한다.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 정의 조항이 자연재해의 종류를 일일이 열거하고 있지 않은 점과 ‘일조량 부족’을 자연재해의 대표적인 종류로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이에 농업재해의 범위에 특정 재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해당 재해의 명시로 인한 실익과 현행 조항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2. 기본계획 수립 주기 단축 및 포함 사항 추가 등(안 제2조의2)

현행법은 농식품부장관 등은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재해보험의 대상 품목 및 대상 지역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윤준병·문대림·이원택 의원안은 기본계획의 변경 근거를 마련하고 기본계획 포함사항에 재해보험의 상품 개발을 추가하며,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박수현의원안은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기본계획 포함사항 중 재해보험 활성화를 위하여 농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산림청장이 농식품부장관에게 건의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명시하며, 기본계획의 수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근거도 마련하고 있음.

현행	윤준병·문대림·이원택의원안	박수현의원안
제2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재해보험(이하 “재해보험”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3조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수산업·어촌	제2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① ----- ----- ----- ----- ----- ----- -----	제2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 ----- ----- ----- ----- ----- -----

현행	윤준병·문대림·이원택의원안	박수현의원안
발전 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u>5년마다</u>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2. (생략) 3. 재해보험의 대상 품목 및 대상 지역에 관한 사항 4. 재해보험사업에 대한 <u>지원 및 평가</u>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해보험 활성화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u>사항</u>	----- ----- ----- ----- ----- ----- -----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② ----- ----- ----- 1.·2. (현행과 같음) 3. ----- <u>품목, 대상 지역 및 상품 개발</u>----- ---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 ----- ----- ----- ----- ----- ----- -----3년마다----- ----- ② ----- ----- 1.·2. (현행과 같음) 3. -----<u>품목 확대 및</u>----- ----- 4. ----- ----<u>지원, 평가 및 개선</u>----- 5. ----- ----- ----- ----- ----- -----<u>사항(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건의하는 사항을 포함한</u>

현행	윤준병·문대림·이원택의원안	박수현의원안
③ ~ ⑤ (생략) <신설>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을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생략)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가.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 단축 시 잦은 정책 변화와 그로 인한 현장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매년 시행계획을 통해 변화하는 재해 양상에 따라 정책을 개선할 수 있으므로 현행 기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다만, 자연적·사회적 여건 등의 변화를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은 있음.

또한, 기본계획에 대상 품목·지역에 더해 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과 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에 대한 보고 근거 마련은 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다만, 산림청장의 건의사항은 내부 검토사항에 해당하므로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임.

나. 검토의견

1)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 단축

박수현의원안에서 그 수립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려는 것은, 이상기후로 인하여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농어업재해보험 관련 자연적·사회적 여건 변화를 기본계획에 적시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이해됨.

관련 입법례를 살펴보면, 농식품부 소관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계획 16개 중 15개의 수립 주기가 5년(1건은 미정)이고 타 부처 소관 법률에서 대부분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정하고 있음.

다만, 주기를 3년으로 정하고 있는 법률도 일부⁸⁾ 존재함.

【 농식품부 소관 법률상 기본계획 수립 주기 현황 】

근거조항	계획명	수립 주기
「밀산업육성법」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밀산업육성 기본계획	5년
「쌀 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쌀 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	5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기본계획)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	5년
「식생활교육지원법」 제14조(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식생활교육 기본계획	5년

8)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과 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3년 단위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수립주기를 단축하거나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2(벤처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① 중소벤처기업 부장관은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벤처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근거조항	계획명	수립 주기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차산업 발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익직접지불제도 기본계획의 수립)	공익직접지불제도 기본계획	5년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	5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후계농어업인의 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5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5년
농어업인삶의질법 제5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5년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	5년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5조(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농업기계화 기본계획	5년
「식품산업진흥법」 제4조(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5년
「외식산업진흥법」 제5조(외식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등)	외식산업 진흥 기본계획	5년
「전통주산업법」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기본계획	5년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	5년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축산계열화사업 발전 기본계획	5년

기본계획은 중장기적 시각에서 보험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것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임.

이와 관련하여 윤준병·문대림·이원택 의원안에서 기본계획의 변경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바, 박수현의원안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농업재해보험과 관련된 자연적·사회적 여건 변화에 적시에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로, 지난 2024년 11월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 안전조정위원회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서는 윤준병·문대림·이원택 의원안과 같이 기본계획의 변경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2) 기본계획 포함 사항 등

현재 이 법에 따라 농식품부가 운영 중인 보험상품은 자연재해로 인한 수확량감소 또는 투입 생산비 손실을 보장하는 농작물재해보험('25년 기준 품목수 76개: 농작물 68개, 임산물 8개), 가축의 폐사 및 자연재해로 인한 축사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가축재해보험(축종수: 16개)임.

한편, 위 품목이 아닌 농작물의 경우 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실제 보상을 받을 수 없음.

【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 현황 】

연도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2001	사과, 배	소('97), 돼지, 말('00)
2002	포도, 복숭아, 단감, 감귤	닭
2003		
2004		오리
2005		꿩, 메추리
2006	뽕은감	칠면조, 사슴
2007	밤, 참다래, 자두	거위, 타조
2008	감자, 콩, 양파, 고추, 시설투박)	양
2009	고구마, 옥수수, 마늘, 매실, 버	
2010	시설투박, 토마토, 오이, 참외), 대추	벌, 토끼
2011	시설투박(풋고추, 애호박, 국화, 장미), 복분자	관상조
2012	인삼, 시설투박(멜론, 파프리카), 오디, 녹차	오소리
2013	시설투박(부추, 시금치, 상추), 버섯(표고, 느타리)	-
2014	시설투박(배추, 가지, 파)	-
2015	시설투박(무, 백합, 카네이션)	-
2016	양배추, 밀, 시설투박미나리, 오미자	-

연도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2017	시설썩갓, 무화과, 유자	-
2018	메밀, 브로콜리, 양송이버섯, 새송이버섯	-
2019	배추, 무, 호박, 당근, 파	-
2020	팥, 살구, 시금치, 보리, 호두	
2023	양상추, 시설 봄감자, 귀리	
2024	수박, 블루베리, 두릅	
2025	녹두, 생강, 참깨	
합계	76	16

※ 자료: 농식품부 농업정책관 재해보험정책과 제출자료('25.6.14)

윤준병·문대림·이원택 의원안은 기본계획에 재해보험의 상품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농어업재해와 관련하여 보험상품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

이는 재해보험 보상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려는 취지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한편, 박수현의원안에서 기본계획 포함사항 중 재해보험 활성화를 위하여 농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산림청장이 농식품부장관에게 건의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명시한 것은 농작물재해보험 운영 등에 있어 산림청이 소관하는 임산물에 관한 사항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산림청은 「정부조직법」 상⁹⁾ 농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기관 내부 검토사항인 산림청장의 건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것은 법체계상 다소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보임.

9) 「정부조직법」 제37조(농림축산식품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축산, 식량·농지·수리, 식품산업진흥, 농촌개발 및 농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④ (생략)

⑤ 산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산림청을 둔다.

3) 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 보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농촌진흥법」¹⁰⁾ 등에서는 해당 법률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제출¹¹⁾하도록 하는 조항을 두고 있음.

이는 기본계획 수립 등의 적시 보고를 통해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국정운영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이에 개정안과 같이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의 경우에도 수립 또는 변경 시에도 국회에 대한 보고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1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세운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농촌진흥법」 제5조(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 등) ⑤ 농촌진흥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추진 실적 등에 관한 연차보고서는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11) 농식품부가 기본계획 등을 공문으로 상임위원회에 보내면 해당 공문을 접수하여 의원실에 공람게시하는 방법으로 보고와 제출이 이루어지고 있음.

3. 실태조사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신설)

윤준병·문대림·이원택·송옥주 의원안은 공통적으로 농식품부장관 등이 기본계획 등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에 관한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현행	윤준병·문대림·이원택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신 설>	제2조의3(실태조사) ① <u>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 현황, 농어업재해의 발생 빈도 및 피해 정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u>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u>내용·시기·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2조의3(실태조사) ① <u>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u> 1. 제11조의8에 따른 <u>재평가 및 이의신청 현황</u> 2. 제26조에 따라 수 <u>집 관리하는 지역별, 재해별 통계자료 수집·관리 현황</u> 3. <u>보험가입자의 보험금 지급신청 및 미지급(미지급 사유를 포함한다) 현황</u> 4. 그 밖에 <u>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u>

현행	윤준병·문대림·이원택의원안	송옥주의원안
		<u>필요한 사항</u> ② <u>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u> ③ <u>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방법과 제2항에 따른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가.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윤준병·문대림·이원택 의원안과 같이 기본·시행계획 수립·시행을 위한 실태조사 필요성에 동의하나, 송옥주의원안의 실태조사의 대상이 되는 자료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이라 함)과 재해보험사업자¹²⁾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농식품부에 보고 중인 사항으로 농식품부에서 이미 수집하고 있어 별도의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은 낮음.

나. 검토의견

위 4건의 개정안에서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은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효과적 수립·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12) 농작물재해보험&농업수입안정보험:NH농협손해보험/가축재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보, DB화재, 메리츠화재, KB손보/양식수산물보험: 수협중앙회

다만, 4건의 개정안은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 차이가 있음

먼저, **윤준병·문대림·이원택 의원안**은 실태조사 대상을 농어업재해 현황, 농어업재해의 발생 빈도 및 피해 정도 등으로 규정하면서 실태조사의 내용·시기·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반면, **송옥주의원안**은 실태조사의 주기는 1년으로, 대상은 손해평가 결과 관련 재평가 및 이의신청 현황, 보험대상이나 피해 원인 및 규모 등의 지역별, 재해별 통계자료 수집·관리 현황 등으로 규정하면서 실태조사 공표의 근거도 마련하고 있음.

【 개정안 비교 】

구분	윤준병·문대림·이원택의원안	송옥주의원안
목적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	
대상	농어업재해 현황, 농어업재해의 발생 빈도 및 피해 정도	손해평가 결과 관련 재평가 및 이의신청 현황, 보험대상이나 피해 원인 및 규모 등의 지역별, 재해별 통계자료 수집·관리 현황 등
시기	시행령에 위임	매년
공표 여부	×	○

먼저, ① 실태조사의 대상에 대하여 살펴보면, **윤준병·문대림·이원택 의원안**은 농어업재해 현황, 농어업재해의 발생 빈도 및 피해 정도 등을 실태조사 대상으로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업재해의 발생 빈도 및 피해 정도 등은 농어업재해 현황에 포함되는 사항이므로 ‘농어업재해의 종류, 발생 빈도 및 피해 정도 등 농어업재해 현황’으로 수정하여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어 보임.

한편, 송옥주의원안에서 실태조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료는 별도로 실태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농금원 및 재해보험사업자 등이 생성·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통해 파악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실태조사의 대상에 규정할 실익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즉, △제11조의8¹³⁾에 따른 재평가 현황(1호)과 △보험가입자의 보험금 지급신청 및 미지급 현황(3호)은 실제 재평가를 실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재해보험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생성·관리 중인 자료이고, △제11조의8에 따른 이의신청 현황(1호) 역시 실제 이의신청 업무를 수행하는 농금원이 관리하고 있음.

【 송옥주의원안에 따른 실태조사 대상자료의 관리 현황 】

자료	현행 관리 주체	비고
(1호) 제11조의8에 따른 재평가 현황	재해보험사업자	재평가 업무 수행
(1호) 제11조의8에 따른 이의신청 현황	농금원	이의신청 업무 수행
(3호) 보험가입자의 보험금 지급신청 및 미지급 현황	재해보험사업자	보험금 지급업무 수행

현행법 제2조의2제5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농식품부장관이 농금원과 재해보험사업자에 위 자료를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13)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8(손해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1조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보험가입자는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해보험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평가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의 재평가를 수행하였음에도 이의가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보험가입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은 보조사업자 등¹⁴⁾으로 하여금 보조사업 등의 수행상황을 중앙관서의 장 등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도 위탁기관이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농식품부장관이 재해보험사업자와 농금원으로부터 해당 사항을 보고받을 수 있음.

【 자료 요청 및 보고 관련 규정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재해보험(이하 “재해보험”이라한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3조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에 따른 중앙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④ <생략>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4조(지휘·감독) ①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4) 재해보험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농금원이 보조사업자, 재해보험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의 지위에 있음.

한편, ② 실태조사의 주기를 1년으로 규정할 것인지, 시행령에 위임할 것인지 여부와 ③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여부는 윤준병·문대림·이원택 의원안과 송옥주의원안에서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고 각각의 입법례 모두 존재하므로 입법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해 보임.

참고로, 지난 2024년 11월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 안전조정위원회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서는 윤준병·문대림·이원택 의원안과 같이 실태조사의 내용·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면서 공표의 근거는 마련하지 아니하였음.

4. 심의회 심의사항 확대(안 제2조의3제3호, 안 제3조)

현행법에 따르면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함)는 재해의 범위, 손해평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재해보험 목적물의 선정 등을 심의하고 있음.

윤준병·문대림·이원택의원안은 심의회의 심의사항인 손해평가의 방법에 농어업재해에 따른 피해율의 산정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심의회가 재해보험 목적물의 선정뿐 아니라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보험 목적물의 확대’에 관한 사항도 심의하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심의회가 심의에 필요한 경우 농업인 또는 이해관계자뿐 아니라 농림축산업인단체의 의견도 청취하도록 함.

현 행	윤준병·문대림·이원택의원안
제2조의3(재해보험 등의 심의) 재해보험 및 농어업재해재보험(이하 “재보험”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3조에 따른 농업재해보험 심의회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조의4(재해보험 등의 심의) ----- ----- ----- ----- ----- ----- -----.
1.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에 관한 사항	1. 2. (현행과 같음)
2. 재해보험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손해평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3. -----방법(농업재해에 따른 피해율의 산정을 포함한다)-----

현 행	윤준병·문대림·이원택의원안
4. ~ 6. (생 략) 제3조(농업재해보험심의회) ① 농업재해보험 및 농업재해재보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조의3 각 호의 사항 2. 재해보험 목적물의 <u>선정</u>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령에서 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② ~ ⑥ (생 략) ⑦ 심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u>농업재해보험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 농업인 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u> ⑧ (생 략)	----- 4. ~ 6. (현행과 같음) 제3조(농업재해보험심의회) ① ----- ----- ----- ----- ----- -----. 1. 제2조의4 각 호의 사항 2. -----<u>선정 및 기후 위기에 따른 재해보험 목적물의 확대</u>----- 3. 4.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 ----- <u>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재해보험-----</u> -----<u>농업인, 농림축산업인 단체-----</u><u>들</u> <u>어야 한다.</u> ⑧ (현행과 같음)

가. 농식품부 의견

① 심의회 심의사항 확대와 관련하여 손해평가의 결과로 재해 피해율이 산정되므로 심의 대상인 ‘손해평가의 방법’에 피해율 산정을

포함하는 것은 가능하며,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보험 목적물의 확대에 관한 심의 필요성도 인정됨.

② **심의회 의견수렴 의무화**와 관련하여서는 농업인, 농림축산업인 단체의 의견 수렴 시 정책의 현장 수용성 제고가 가능해지므로 타당한 개정 조치로 판단됨.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2조의3은 농어업재해보험 및 재보험에 관한 재해의 범위, 손해평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또한, 제3조에서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설치근거를 두고 제2조의3 각 호의 사항과 재해보험 목적물의 선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농업재해보험심의회 심의사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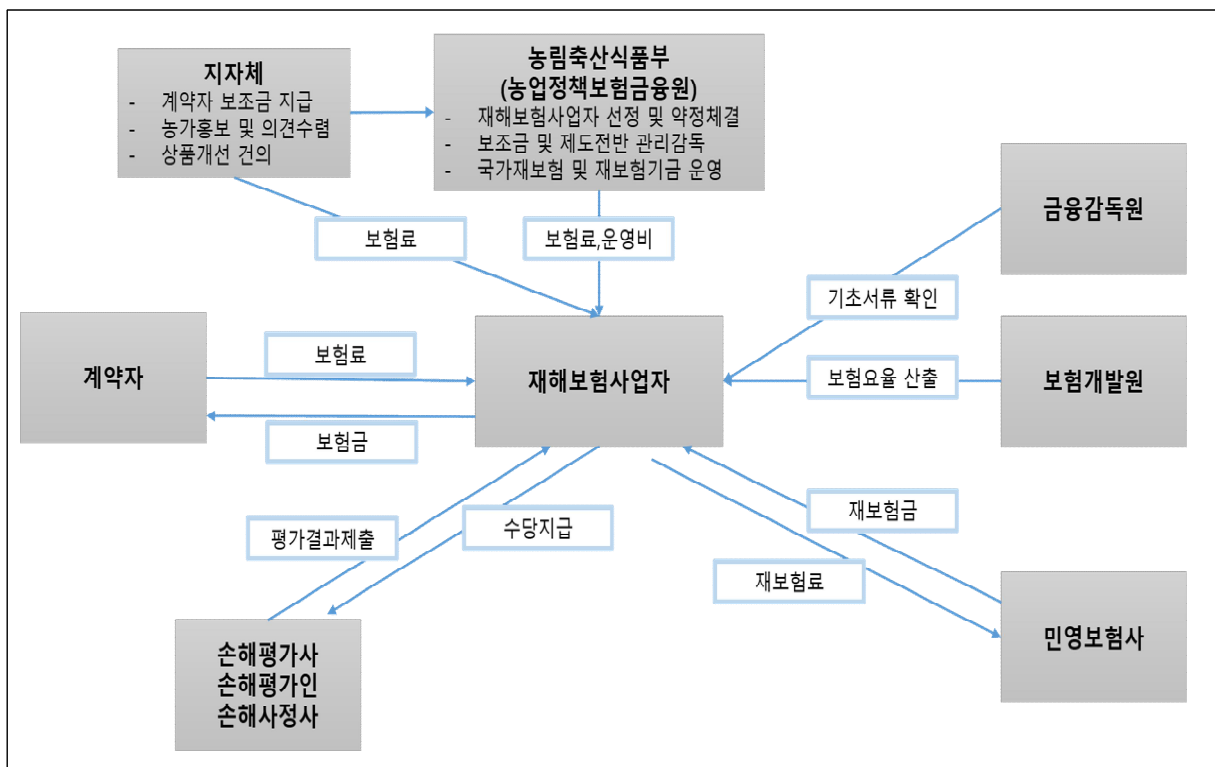
구분	심의사항
제2조의3 각 호	■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에 관한 사항 ■ 재해보험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 손해평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 재보험사업에 대한 정부의 책임범위에 관한 사항
제3조	■ 재해보험 목적물의 선정에 관한 사항 ■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등

윤준병·문대림·이원택의원안은 심의회의 심의사항을 확대 규정하고 있음.

첫째, 기존 심의사항인 손해평가의 방법에 ‘농어업재해에 따른 피해를 산정’이 포함됨을 명시함.

개정안의 내용을 검토하기에 앞서 농작물재해보험의 운영과 관련하여 상품준비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의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농작물재해보험 운영 절차도 】



※ 자료: 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23.1, 농식품부) 재구성

먼저, 상품준비단계로 농식품부, 농금원, 지자체, 보험사업자인 농협 손해보험 등은 신규품목 도입 및 기 운영 중인 품목의 상품개선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보험요율 산출기관인 보험개발원에서 보험료율을

산출하면 금융감독원이 수리함.

상품판매단계에서는 농협손보가 보험상품을 판매하면 농업인 등이 지역 농축협에 방문하여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농식품부 및 지자체는 보험료를 지원함.

이후 재해발생 시에 계약자가 사고를 접수하면 농협손보에서 구정한 손해평가반이 손해평가를 실시하여 피해율이 산정되고 농협손보에서 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보험금을 확정·지급함.

마지막으로, 사후관리단계에서 재보험 정산단계에서 농식품부, 농협손보, 민영재보험사 등이 재보험료 및 재보험금을 정산함.

이와 같이 손해평가의 결과로 피해율¹⁵⁾이 산정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손해평가의 방법에 ‘재해에 따른 피해율’이 포함됨을 명시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임.

둘째, 개정안은 심의회가 재해보험 목적물의 선정뿐 아니라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보험 목적물의 확대’에 관한 사항도 심의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상의 빈번한 발생으로 농어업재해의

15) 산출기준은 품목마다 별도 규정하고 일례로 수확감소보장 상품의 경우 다음과 같이 피해율이 측정됨.

○ 수확감소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① - 자기부담비율②)

① 피해율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 평년수확량: 직전 5개년 수확량의 평균

** 미보상감수량: 보상하지 않는 손해, 농가의 농업활동 미비 등으로 발생한 수확감소량

② 자기부담비율 =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발생시 농가가 부담하는 비율로, 가입 시 농가가 선택(10·15·20·30·40%형)

심각성과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발간한 ‘2024년 이상기후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한반도를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폭염, 한파, 대규모 홍수, 극심한 가뭄 등으로 이미 많은 지역에서 인명 피해와 함께 농업, 산업, 생활에 심각한 영향이 증가하고 있음¹⁶⁾.

2024년 농업분야에는 이상기후로 인한 대설·한파(1~2월), 일조량 부족, 우박(5월), 집중호우(7월, 8월), 폭염 및 이상고온(7~9월), 대설(11월) 등 농업재해가 연속적으로 발생¹⁷⁾한 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농해수위 2024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서도 벼멸구와 배, 레드향 등의 열과 피해(열매가 터짐) 등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 피해에 대한 보상 인정 및 보장 범위 확대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사항으로 채택하기도 하였음.

이에 개정안과 같이 심의사항에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보험 목적물의 확대’를 추가 규정할 경우 재해보험 목적물 확대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셋째, 개정안은 심의회의 심의 시에 농업재해보험 관련 전문가, 농업인 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고 있음.

16) 2024년 이상기후 보고서, 관계부처 합동, 2025년, p.6

17) 2024년 이상기후 보고서, 관계부처 합동, 2025년, p.64

심의회 위원은 관계부처 등 당연직 7명, 분야별 전문가(보험연구, 보험계리, 작물, 의학, 재보험 등) 5명, 농림축산업인단체 3명, 보험사업자·사업관리기관 3명, 학계 2명, 시민단체 1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심의회의 구성 】

합계	당연직 공무원	분야별 전문가 (보험연구, 보험계리, 작물, 의학, 재보험 등)	농업계 대표	보험사업자, 보험사업관리기관	학계	시민단체
21명	7명	각 1명	3명	3명	2명	1명

※ 자료: 농식품부 농업정책관 재해보험정책과 제출자료('25.6.14)

이와 같이 심의회 위원에 전문가, 농림축산업인단체 등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별도의 의견 청취를 통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할 경우 재해보험 당사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현장 수용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5. 기후위기 전문위원회 설치 등(제3조의2,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등)

송옥주의원안은 기후변화가 농업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재해보험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문위원회(이하 ‘기후위기 전문위원회’라 함)를 설치하고, 기후위기 전문위원회가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의 범위 확대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송옥주의원안
<신 설>	제3조의2(기후위기 전문위원회) ①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농업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재해보험정책 수립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문위원회(이하 “기후위기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기후위기 전문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보험 보험목적물의 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 2.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의 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재해와 관련된 사항 ③ 기후위기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농

현 행	송옥주의원안
제5조(보험목적물) ① (생 략) ② 정부는 <u>보험목적물</u>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보상의 범위 등) ①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u>해당</u> 재해의 발생 빈도, 피해 정도 및 객관적인 손해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재해보험의 종류별로 <u>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② 정부는 <u>재해보험</u>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2. (생 략)	<u>농림축산식품부차관으로 하고, 기후위기 전문위원회</u> 위원은 <u>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u>. ④ <u>그밖에 기후위기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5조(보험목적물) ① (현행과 같음) ② -----<u>기후위기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험목적물</u>----- -----. 제6조(보상의 범위 등) ① ----- -----<u>제2조의3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u>----- -----<u>정한다</u>. ② -----<u>기후위기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재해보험</u>----- -----. 1. 2. (현행과 같음)

가. 관련 부처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① 기후위기 전문위원회 설치: 이미 운영 중인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통해 효율적인 재해보험정책 수립이라는 기후위기 전문위원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심의회와 성격·기능이 유사하여 수용이 곤란함.

② 재해의 범위를 심의회에서 심의: 안정적 제도 운영을 위해 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현행 기준 유지가 바람직함.

2) 행정안전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는 기존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도록 하고,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전문위원회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기후위기 전문위원회는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활용하거나 농업재해보험심의회위원회의 전문위원회 형태로 설치·운영하면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도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3) 기획재정부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를 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정하도록 할 경우 보상하는 재해의 잦은 변경이 예상되며, 그로 인한 정부 소요예산 변동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나. 검토의견

개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상의 빈번한 발생으로 농어업재해의 심각성과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는 인식에 따라 농식품부에 기후변화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재해보험정

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됨.

개정안에 따르면 기후위기 전문위원회는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의 범위 및 보험목적물의 확대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자문위원회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임.

다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¹⁸⁾는 기존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의 설치를 금지하고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전문위원회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현재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있는 농업재해보험심의회¹⁹⁾를 활용하거나 해당 심의회의 전문위원회 형태로 기후변화 전문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농업재해보험심의회 개요 >

- ▶ **설치목적:** 농업재해보험에 관한 사항 심의
 - ▶ **심의사항:**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에 관한 사항, 재해보험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손해평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등
 - ▶ **구성 현황:** 21명 이내(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당연직 7명, 위촉직 14명)
 - ▶ **분과위원회 운영:** 농작물재해보험분과위원회, 임산물재해보험분과위원회, 가축재해보험분과위원회, 농업인안전보험분과위원회
- ※ 전문위원회는 미구성

18)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9)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의3(재해보험 등의 심의) 재해보험 및 농어업재해재보험(이하 “재보험”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3조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윤준병·문대림·이원택의 원안**에서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심의사항에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보험 목적물의 확대’를 추가하고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개정안은 기후위기 전문위원회 설치 목적의 하나로 ‘기후변화가 농업재해에 미치는 영향 파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르면 기후변화가 농업 등 우리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 평가 등을 위하여 환경부 중심으로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가 운영되고 있고, 정부가 5년마다 부문별·지역별 기후위기의 영향과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기후위기적응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는 점²⁰⁾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규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7조(기후위기의 감시·예측 등) ①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를 상시 측정·조사하고 기상현상에 대한 관측·예측·제공·활용 능력을 높이며 기후위기에 대한 감시·예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기후위기가 생태계, 생물다양성, 대기, 물환경, 보건, 농림·식품, 산림, 해양·수산, 산업, 방재 등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성, 위험 및 사회적·경제적

1.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재해보험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손해평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후 략>
- 제3조(농업재해보험심의회)** ① 농업재해보험 및 농업재해재보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조의3 각 호의 사항
 2. 재해보험 목적물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령에서 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 20) 관계부처 합동,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21~2025) 세부시행계획

파급효과를 조사·평가하는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제1항에 따른 기상정보관리체계 및 제2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제3항에 따른 시책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기후위기의 감시·예측 등) ①·② <생 략>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이하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기상정보관리체계와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의 원활한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 분야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38조(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① 정부는 국가의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기후위기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후위기적응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위기에 대한 감시·예측·제공·활용 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2. 부문별·지역별 기후위기의 영향과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
3. 부문별·지역별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후 략>

다음으로, 개정안에서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를 심의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시행령 및 「농업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별 보상하는 병충해 및 질병규정」(농식품부고시)²¹⁾을 통해 그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음.

그런데 심의회에서 그 범위를 정하도록 할 경우 심의회 결과에 따라 그 변동성이 커지게 되고, 이로 인해 보상 재해 범위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하시켜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21) 시행령 제8조상 별표1과 농업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별 보상하는 병충해 및 질병규정, 구체적인 규정 내용은 참고자료2 참조

또한, 보험에서 보장하는 위험, 즉 재해의 범위가 보험계약 전에 확정되지 않을 경우 보험료율 산출이 불가능해 보험상품 판매 자체가 어려운 문제가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즉, 보험상품은 해당 보험에서 보장하는 위험의 수준을 기반으로 산출한 보험료율(보험료)²²⁾, 보험사고 시 보험금 지급 절차 및 수준 등을 보험약관에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판매하고 있음.

22) 개별 계약자별로 보험에 가입하는 보험목적물의 경제적 가치(보험가입금액)에 보험료율을 곱하면 계약자가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가 산출됨.

6. 보험료율 산정 시 할증 제한 기준 도입(제9조제2항 신설)

현행법은 재해보험사업자는 재해보험의 보험료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보험목적물별 또는 보상방식별로 산정하되, 행정구역 단위 및 권역 단위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윤준병·문대림·이원택의원안은 보험료율 산정 시 예측 불가능한 재해나 거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에 따른 할증의 적용을 금지하고 있음.

한편, 어기구의원안은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료율을 행정구역 등 단위로산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재해보험가입자의 부당한 보험료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	윤준병의원안	문대림의원안	이원택의원안	어기구의원안
제9조(보험료율의 산정) ① 제8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재해보험사업자의 약정을 체결한 자(이하 "재해보험사업자"라 한다)는 재해보험의 보험료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제9조(보험료율의 산정) ① (현행과 같음)	제9조(보험료율의 산정) ① (현행과 같음)	제9조(보험료율의 산정) ① (현행과 같음)	제9조(보험료율의 산정) ① (현행과 같음)

현행	윤준병의원안	문대림의원안	이원택의원안	여기구의원안
보험목적물별 또는 보상방식별로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위로 산정하여야 한다. 1. 행정구역 단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군·자치구. 다만, 「보험업법」 제129조에 따른 보험료율 산출의 원칙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읍·면·동 단위로도 보험료율을 산정할 수 있다. 2. 권역 단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행정구역 단위와는 따로 구분하여 고시				

현행	윤준병의원안	문대림의원안	이원택의원안	여기구의원안
하는 지역 단위 <신설>	② 재해보험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산정 시 예측 불가능한 재해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는 할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증을 적용할 수 있다. 1. 10년 빈도 이하의 재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 재해가 발생한 경우 2. 농어업인이 피해경	② 재해보험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산정할 때 거대 자연재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농어업 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한 할증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농어업인이 그 재해로 인한 피해경감을 위하여 노력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할증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재해보험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산정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 또는 거대재해로 인한 피해에 따른 할증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농어업인의 피해경감 노력 불이행에 따른 할증은 제외한다.	② (현행과 같음)

현행	윤준병의원안	문대림의원안	이원택의원안	여기구의원안
②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약관안과 보험료율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 예정된 경우 이를 공고하고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u>감 노력을</u> <u>이 행 하 지</u> <u>아니한 경</u> <u>우</u>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재해보험사업자는 <u>보</u> <u>험료율을 제</u> <u>1항 각 호의</u> <u>구분에 따른</u> <u>단위로 산정</u> <u>함에 따라</u> <u>발생하는 재</u> <u>해보험가입</u> <u>자의 부당한</u> <u>보험료의 상</u> <u>승을 방지하</u> <u>기 위하여</u> <u>노력하여야</u> <u>한다.</u>

가.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윤준병·문대림·이원택의원안과 같이 재해보험사업자의 보험료를 산정 시 할증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자연재해는 사실상 모두 불가항력적이고 보험 가입 시점에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재의 후 폐기된 기존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대안)」 제9조제2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판단됨.

할증 제한 시 ‘보험계약으로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보다 ‘사고 발생

시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의 합계'가 커지게 되어 수지상등의 원칙에 반하고 보험으로서 존립할 수 없게 됨.

또한, 그 차액을 정부가 부담하는 경우 보험료가 가입자의 재해위험도에 비례해 부과되어야 한다는 급부·반대급부 균등의 원칙 위반 소지가 있음.

여기구의원안과 관련하여서는 보험료율은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요율 산출기관 등이 보험요율 산출 원칙에 따라 산출한 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금융위원회에서 「보험업법」에 적합 시 수리하므로 부당하게 책정되기 어려운 구조임.

현행법에서 재해보험 요율 산정 단위를 시·군 등으로 정하고 있어 시·군 등의 기본요율이 인상되는 경우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농어가에 대해서도 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는데 이를 부당 상승으로 보기 어려움.

나. 검토의견

먼저, 윤준병·문대림·이원택의원안은 보험료율 산정 시 각각 '예측 불가능한 재해', '거대 자연재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재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 또는 거대재해'로 인한 피해에 따른 할증 적용을 금지하고 있음.

또한, 공통적으로 농어업인의 피해경감 노력 불이행에 따른 할증은 허용하고, 윤준병의원안의 경우 10년 빈도 이하의 재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재해 피해에 대한 할증 역시 할증 금지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개정안 비교 】

구분	윤준병의원안	문대림의원안	이원택의원안
할증 적용 금지 대상	■ 예측 불가능한 재해 에 따른 피해	■ 거대 자연재해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재해 에 따른 피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항력적인 자연재 해 또는 거대재해에 따른 피해
할증 적용 금지 예외	■ 농어업인의 피해경감 노력 불이행		
	■ 10년 빈도 이하의 재 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재해		

이는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할증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농어업인의 부담을 완화해주려는 취지로 이해됨.

구체적인 논의에 앞서 현행 보험료를 산정 방식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음.

보험료 산정은 보험계약자로부터 거수한 보험료의 합계액과 사고 발생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동일하도록 해야 한다는 ‘수지상 등(收支相等)의 원칙’과 가입자 각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지급보험금에 사고 발생의 확률(재해위험도)을 곱한 금액과 같게 가입자별 재해 위험도에 비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는 급부·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

【 보험료 산정의 기본 원칙 】

원칙	산출방식
수지상등	수입 보험료 합계 = 지출 보험금의 합계 * 계약자수 × 평균보험료 = 사고발생 건수 × 평균지급보험금
급부·반대급부균등	보험료 = 지급보험금 × 사고 발생 확률(재해위험도)

일반법인 「보험업법」 제129조²³⁾상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요율을 산출할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대수(大數)의 법칙²⁴⁾ 및 통계신뢰도를 바탕으로 하여야 함.

또한, 보험회사의 준수사항으로 ① 보험요율이 보험금 등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지 아니할 것, ② 보험요율이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크게 해칠 정도로 낮지 아니할 것, ③ 보험요율이 보험계약자 간에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이 법은 대수(大數)의 법칙 및 통계신뢰도를 바탕으로 보험요율을 산출할 수 있는 기본단위를 행정구역으로 구분하여 시·군 등을 동일한 재해위험도를 갖는 집단으로 정하고 있고, 통계가 충분한 일부 품목은 읍·면·동 단위로도 보험요율을 산출 중임.

23) 「보험업법」 제129조(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보험회사는 보험요율을 산출할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대수(大數)의 법칙 및 통계신뢰도를 바탕으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보험요율이 보험금과 그 밖의 급부(給付)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지 아니할 것
2. 보험요율이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크게 해칠 정도로 낮지 아니할 것
3. 보험요율이 보험계약자 간에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아니할 것<후략>

24) 적은 규모 또는 소수로는 불확정적이거나 대규모 또는 다수로 관찰하면 거기에 일정한 법칙이 있게 되는데 이를 대수의 법칙이라고 함.

실제 재해보험의 기본 보험료율은 수지상등의 원칙에 따라 누적손해율(총보험금/총보험료)²⁵⁾이 100%가 되도록 매년 조정되고 있음. 즉, 누적손해율이 100% 초과 시 보험료율이 인상되고, 100% 미만 시 보험료율이 인하되는 구조임.

참고로, 농작물재해와 관련하여 2024년 기준 17개 전국 시도별 누적손해율('01~'24)을 살펴보면, 전국 누적손해율은 99.4%이며, 충북이 114.0%, 서울이 31.0%로 나타나는 등 재해 발생에 따라 지역별 편차가 존재함.

【 시도별 누적손해율(회계연도 기준) 】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99.4	31.4	58.7	95.3	106.7	75.6	83.9	82.0	87.6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71.3	98.7	114.0	109.8	112.9	102.2	103.2	78.8	77.5

※ 자료: 농식품부 농업정책관 재해보험정책과 제출자료('25.6.18)

한편, 개별 농가의 최종 보험료를 산출함에 있어서는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농가 및 손해율이 낮은 농가 등에 보험료 상승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가입 농가의 과거 5개년 누적손해율(보험금/보험료)에 따른 할인·할증과 방재시설 설치 할인²⁶⁾ 등을 반영하고 있음.

25) 누적손해율 = ('01~'23년 보험금 합계/'01~'23년 보험료 합계) × 100

26) 사고 발생확률을 낮추는 방재시설을 설치한 농지·과수원의 경우 농가당 3~30%까지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있음.

【 농작물재해보험 할인·할증(2025년 기준) 】

평가기간 누적손해율	1년	2년	3년	4년	5년
20%미만	-10%	-13%	-18%	-25%	-30%
20%이상 40%미만	-8%	-10%	-13%	-18%	-25%
40%이상 60%미만	-5%	-8%	-10%	-13%	-18%
60%이상 80%미만	-4%	-5%	-8%	-10%	-13%
80%이상 120%미만	-	-	-	-	-
120%이상 150%미만	2%	3%	5%	6%	7%
150%이상 180%미만	3%	5%	6%	7%	8%
180%이상 200%미만	5%	6%	7%	8%	9%
200%이상 250%미만	6%	7%	8%	9%	11%
250%이상 300%미만	7%	8%	9%	11%	13%
300%이상 350%미만	8%	9%	11%	13%	17%
350%이상 400%미만	9%	11%	13%	17%	25%
400%이상 450%미만	11%	13%	17%	25%	33%
450%이상 500%미만	13%	17%	25%	33%	42%
500%이상	17%	25%	33%	42%	50%

※ 자료: 농식품부 농업정책관 재해보험정책과 제출자료('25.6.18)

< 개별 농가 최종 보험료 >

보험료=보험가입금액×시군 기본보험료율×개인별 할인·할증률×방재시설 할인율

재해보험 보험료 할증 제한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먼저, 개정안에 따르면 농어업재해보험에 대해서는 보험의 기본원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측면이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윤준병의원안 및 이원택의원안은 할증 적용 금지 대상으로 각각 예측 불가능한 재해에 따른 피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 또는 거대재해에 따른 피해를 규정하고 있음.

자연재해는 사실상 모두 불가항력적이고 보험 가입 시점에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내용은 모든 재해 피해에 따른 할증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그런데 자연재해로 인한 할증을 제한하는 경우 ‘보험계약으로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보다 ‘사고 발생 시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의 합계’가 커지게 되어 수지상등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보험의 존립 기반이 위협받게 됨.

또한, 재해 발생의 빈도가 증가하면 그만큼 재해위험도가 증가하여 보험료도 비례하여 증가하여야 한다는 급부·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아 보험 기능의 정상적인 작동이 저해될 수 있음.

다만,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농어업재해보험에 관한 재보험사업²⁷⁾을 운영 중이며, 재해보험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재보험사인 국가가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으로 재보험금을 지급하여 그 손실을 보상²⁸⁾해주고 있으므로 보험료 할증 제한으로 재해보험에서 손실이 발생하여도 일정기간 동안은 재해보험이 운영될 수 있는 여지도 있어 보임.

현행 국가재보험제도는 농어업재해보험(가축재해보험 제외)을 대상으로 거대재해로 인한 위험의 일부를 국가가 인수하는 것이며, 재해보험에서 발생하는 손실과 이익 모두를 재보험사업 참여자 간 일정 비

27) 제20조(재보험사업) ① 정부는 재해보험에 관한 재보험사업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재보험에 가입하려는 재해보험사업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보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재해보험사업자가 정부에 내야 할 보험료(이하 "재보험료"라 한다)에 관한 사항
2. 정부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하 "재보험금"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재보험수수료 등 재보험 약정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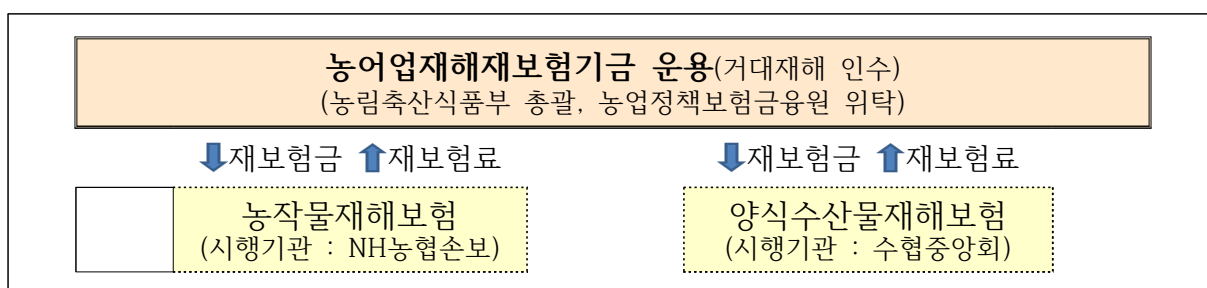
28) 재해보험에서 발생하는 손실과 이익을 국가가 본사업의 54~94%, 시범사업의 96~99% 인수

율에 따라 배분하는 구조임.

재보험기금은 국가재보험사업에서 발생하는 재보험료를 주요 세입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손실 발생 시 기금에서 지출되어 재해보험사업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임

즉, 농작물재해보험에서 이익 발생(보험료 > 보험금) 시 보험사업의 이익은 재보험사업 참여자 간 배분하며 국가분 배분액을 재보험료로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으로 수입처리하고, 손실 발생(보험료 < 보험금) 시 국가가 분담하는 금액을 재보험금으로 보험사업자에게 집행하는 구조임.

【 재보험제도 운영 구조 】



※ 자료: 농식품부 농업정책관 재해보험정책과 제출자료('24.9.14)

【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운영 방식 】



※ 자료: 농식품부 농업정책관 재해보험정책과 제출자료('24.9.14)

참고로, 농작물재해보험의 연도별 재보험료 수입과 재보험금 지급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연도별 농작물재해보험 재보험료 수입 및 재보험금 지급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05~'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합 계
재보험료	84,857	25,058	13,818	31,616	32,095	△2	8,402	104,720	169,443	-	470,007
재보험금	298,289	3,773	574	10,000	265,288	40,179	147,467	-	4	158,198	923,772

※ 자료: 농식품부 농업정책관 재해보험정책과 제출자료('24.6.14. 제출)

그런데 개정안에 따른 할증 제한으로 농작물재해보험에서 지속적인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가 기금에서 지출해야 하는 손실 부담액이 증가하므로 국가 재정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재해보험제도의 지속적인 운영을 담보할 수 없음.

이에 개정안과 같이 보험료 할증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재보험기금을 충당하는 국가 재원의 마련 방안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한편, 보험료 할증 제한 예외사유와 관련하여 각각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먼저, 3건의 개정안에서 공통적으로 피해경감 노력을 불이행하는 경우 할증을 허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개정안의 조문상으로는 피해경감 노력이 무엇인지 특정할 수 없는 점, 2024년 기준 농어업재

해보험가입자는 6만 3,500명에 달하고 있어 가입자의 노력 이행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야 할 것임.

다음으로, 윤준병의원안의 ‘10년 빈도 이하의 재해’도 그 의미가 불분명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즉, ‘10년 빈도 이하의 재해’를 재해의 종류 자체에 한정해서 볼 경우 가뭄, 태풍, 대설, 한파, 폭염, 일조량 부족 등 자연재해의 대부분이 정도는 다르지만 매년 발생하고 있어 이들 모두 예외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

이와 달리 ‘10년 빈도 이하의 재해’를 특정 지역에서의 재해의 규모나 정도 등을 고려한 개념으로 이해할 경우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지점이나 재해 규모(정도)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임.

한편, 어기구의원안은 재해보험사업자에게 부당한 보험료 상승 방지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자연재해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농어업인은 자신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다른 지역의 농어업인보다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이와 같은 문제는 현행법에서 재해보험 기본요율 산정 단위를 시·군 등 행정구역 단위로 정하고 있음에 따른 것으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거나 손해율이 낮은 농가 등에 보험료 상승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할인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다만, 이에 더하여 실제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개별 농어가의 보험료율 인상 부담을 추가로 완화하기 위해서는 기본 보험료율 산정 단위 변경 또는 보완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7. 손해평가인의 교육 내용 구체화 등(안 제11조제5항 및 안 제25조의2제1항제4호)

현행법은 농식품부장관 등으로 하여금 손해평가인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재해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손해평가인력의 육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윤준병·문대림·이원택의원안은 정기교육 내용에 농어업재해보험 대상품목의 품종, 수량, 재배방식 등의 내용이 포함됨을 명시하는 한편, 농식품부장관등의 수행 업무에 손해평가인력의 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대한 전문성 제고를 포함하려는 것임.

현행	윤준병·문대림·이원택의원안
제11조(손해평가 등) ① ~ ④ (생략)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u>손해평가인이</u> 공정하고 객관적인 <u>손해평가를</u> 수행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u>정기교육</u> 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손해평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u>손해평가인의</u> ----- <u>손해평가와</u> <u>손해평가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u> ----- <u>농어업재해보험 대상</u> <u>품목의 품종, 재배방식 등의 내용으</u> <u>로 정기교육</u> -----.
⑥ (생략) ②·③ (생략) 제25조의2(농어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⑥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의2(농어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 ① ----- ----- -----

현행	윤준병·문대림·이원택의원안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3. (생략) 4. 손해평가인력의 <u>육성</u> 5. (생략) ②·③ (생략)	-----. 1. ~ 3. (현행과 같음) 4. ----- <u>육성 및 재해보</u> <u>험 대상 품목에 대한 전문성 제고</u> 5.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가.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손해평가인을 포함한 손해평가인력의 전문성 제고와 손해평가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내용의 구체화 필요성에 동의함.

나. 검토의견

이 법에 따른 손해평가는 재해보험사업자가 위촉한 ① 손해평가인(보험목적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등), 농식품부장관이 시행하는 손해평가 자격시험에 합격한 ② 손해평가사,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③ 손해사정사 등이 담당하고 있음²⁹⁾.

29)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손해평가 등)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목적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또는 그 밖의 관계 전문가를 손해평가인으로 위촉하여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하거나 제11조의2에 따른 손해평가사(이하 "손해평가사"라 한다) 또는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에게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후략>

제11조의2(손해평가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촉진하기 위하여 손해평가사 제도를 운영한다.

제11조의4(손해평가사의 시험 등) ① 손해평가사가 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보험업법 제186조(손해사정사) ① 손해사정사가 되려는 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 기간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등록, 시험 과목 및 시험 면제와 실무수습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후략>

【 손해평가 업무 수행 주체별 비교 】

구분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손해평가인
법적근거	「재해보험법」 제11조2	「보험업법」 제186조	「재해보험법」 제11조
자격요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위탁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보험개발원이 위탁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실무수습을 마친 후 금융감독원에 등록한 자	「재해보험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 보험사업자가 위촉한 자
소속기관	평가시험회, 손사법인 등	보험회사, 손사법인 등	평가시험회, 지역농협 등
선발인원	제한없음	연간 50명 (재물손해사정사 한정)	제한없음

※ 자료: 농식품부 농업정책관 재해보험정책과 제출자료('24.8.14)

현재 손해평가인은 연 1회 이상 정기교육 및 실무교육을 받고 있는데 교육내용은 농업재해보험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농업재해보험 종류별 약관,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이론 및 실무에 관한 사항 등임.

최근 현장에서는 손해평가인력의 농업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농가에서 손해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해 추가 조사 및 재평가를 요청하기도 함.

이에 개정안은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손해평가인에 대한 교육내용을 구체화하고 농식품부장관 등이 손해평가인력에 대한 전문성 제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손해평가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통해 농어업인이 재해피해로 인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8. 손해평가 결과 이의신청 시 보험가입자의 손해평가사 교체 요구 수용 근거 마련(안 제11조의8제1항 변경)

4건의 개정안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위하여 농식품부장관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평가에 대한 검증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윤준병·문대림·이원택의원안은 보험가입자가 손해평가에 이의가 있어 재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손해평가인력의 교체도 요구할 수 있는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윤준병·문대림·이원택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제11조(손해평가 등)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목적 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또는 그 밖의 관 계 전문가를 손해평가인으 로 위촉하여 손해평가를 담 당하게 하거나 제11조의2에 따른 손해평가사(이하 "손 해평가사"라 한다) 또는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 른 손해사정사에게 손해평 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인 과 손해평가사 및 「보험업 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 사정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 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손해평가 요령에 따라 손해평가를 하 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하 고 객관적으로 손해평가를 하여야 하며, 고의로 진실 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	제11조(손해평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현행	윤준병·문대림·이원택의원안	송옥주의원안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 ⑥ (생략) <u><신설></u> ⑦ 제1항에 따라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요건, 제5항에 따른 정기교육, 제6항에 따른 기술·정보의 교환 지원 및 손해평가 실무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8(손해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1조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보험가입자는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해보험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평가 요청에 따라야 한다. <u><후단 신설></u>	⑦ <u>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 요령에 따라 손해평가에 대한 검증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u>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제11조의8(손해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 ----- ----- ----- ----- ----- ----- ----- ----- ----- 이 경우 보험가입자는	⑦ <u>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위하여 손해평가에 대한 검증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u> ⑧ ----- ----- ----- ----- ----- -----실무교육, 제7항에 따른 검증조사 등----- ----- ---

현행	윤준병·문대림·이원택의원안	송옥주의원안
②·③ (생략)	<u>당초 손해평가를 담당 하였던 손해평가인과 손해평가사 및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해보험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 ②·③ (현행과 같음)	

가.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검증조사는 이미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농식품부 고시)’에 따라 시행 중인 사항으로 법제화 필요성에 동의하고, 공정한 손해평가를 위해서는 재평가 시 당초 손해평가를 담당했던 손해평가인력이 교체될 필요가 있으므로 적절한 입법 조치로 판단됨.

나. 검토의견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농식품부 고시 제2024-25호, 2024. 3. 29., 일부개정) 제11조는 재해보험사업자 및 농금원으로 하여금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및 손해사정사 등 손해평가인력이 한 손해평가 결과의 일정수를 임의 추출하여 검증조사를 하도록 하면서 검증조사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검증조사 관련 규정 】

제11조(손해평가결과 검증) ① 재해보험사업자 및 법 제25조의2에 따라 농어업 재해보험사업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사업 관리 위탁 기관"이라 한다)은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손해평가를 실시한 보험목적물 중에서 일정수를 임의 추출하여 검증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해보험사업자로 하여금 제1항의 검증조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재해보험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증조사결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어 재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손해평가반이 조사한 전체 보험목적물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④ 보험가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검증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검증조사반은 검증조사가 불가능하여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한 후 검증조사결과를 작성하여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 관리 위탁 기관이 검증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재해보험사업자에게 통보하고 필요에 따라 결과에 대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해보험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에 따른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농금원은 매년 가입·지급실적이 높거나 상품개선이 이루어진 품목을 중심으로 조사대상을 선정³⁰⁾하여 계약 인수의 정확도 및 손해평가인력의 손해평가 절차준수 여부, 손해평가 결과 등을 조사하고 있음.

개정안은 현재 농식품부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검증조사 실시 근거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손해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담보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한편, 가입자가 손해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험사업자에 요청할 수 있으며, 매년 손해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어 재평가를 요청하는 건수가 1,000건 이상임.

30) 2023년 23년 기준 벼, 사과, 배, 고추 등을 대상으로 사전조사(170,738건) 및 현지조사(5,769건)를 실시함

【 연도별 재평가 추진 현황('21~'23) 】

구분	'21	'22	'23
요청건수	1,815	1,246	1,150
재평가건수	1,815	1,246	1,150

※ 자료: 농식품부 농업정책관 재해보험정책과 제출자료('24.8.14)

윤준병·문대림·이원택의원안은 보험가입자가 손해평가 결과에 대한 재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손해평가사의 교체도 함께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공정한 손해평가를 담보하려는 취지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참고로, 현재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농식품부고시)에 따르면 보험가입자가 손해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어 재조사를 요청할 경우 기존 손해평가사 등은 재조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보험가입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기존 담당 손해평가사 등의 의무적인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음.

【 농어업재해보험법 손해평가요령 】

제8조(손해평가반 구성 등)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제2조제1호의 손해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손해평가반을 구성하고 손해평가반별로 평가일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하며, 5인 이내로 한다.

1. 제2조제2호에 따른 손해평가인
2. 제2조제3호에 따른 손해평가사
3.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평가에 대하여는 해당자를 손해평가반 구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3. <생략>

4. 자기가 실시한 손해평가에 대한 검증조사 및 재조사

9. 보험목적물 범위 확대 노력 등(안 제5조제2항)

현행법은 정부에 보험목적물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윤준병·문대림·이원택 의원안은 보험목적물 범위 확대의 주기를 1년
으로 정하고 있음.

박수현의원안은 보험목적물 확대 노력 시 보험목적물의 품목 수 등 보험목적물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윤준병·문대림·이원택의원안	박수현의원안
제5조(보험목적물) ① ① 보험목적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되, 그 구체적인 범위는 보험의 효용성 및 보험 실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3조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다.	제5조(보험목적물) ① (현행과 같음)	제5조(보험목적물) ① (현행과 같음)
1. 농작물재해보험: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		
1의2. 임산물재해보험: 임산물 및 임업용 시설물		
2. 가축재해보험: 가축 및 축산시설물		
3.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양식수산물 및 양식시설물		
② 정부는 보험목적물의 범위를 <u>확대하기</u> 위하	② ----- ----- <u>매년 확대하기</u> -----	② ----- -----

현행	윤준병·문대림·이원택의원안	박수현의원안
여 노력하여야 한다. <u><후단 신설></u> 제6조(보상의 범위 등) ①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해당 재해의 발생 빈도, 피해 정도 및 객관적인 손해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재해보험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정부는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u>범위를</u>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 <u>이 경우 보험목적물의 품목 수 등 보험목적물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u> 제6조(보상의 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u>범</u> <u>위와 품목을</u>----- ----- ---.

가.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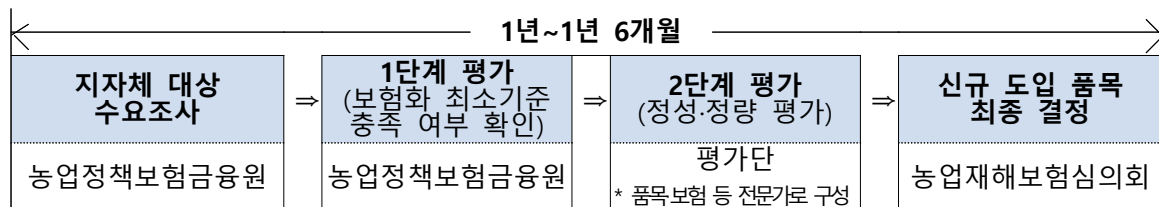
매년 보험목적물의 확대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에 동의함. 다만, 박수현의원안과 같이 보험대상 품목 선정 시 보험목적물 간 형평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것은 보험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음.

나. 검토의견

현재 농식품부는 보험목적물의 품목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 중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2027년까지 보험목적물(대상 품목)을 현행 73개에서 80개로 매년 확대할 계획³¹⁾임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2년마다 지자체 수요조사,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신규 도입 품목을 선정 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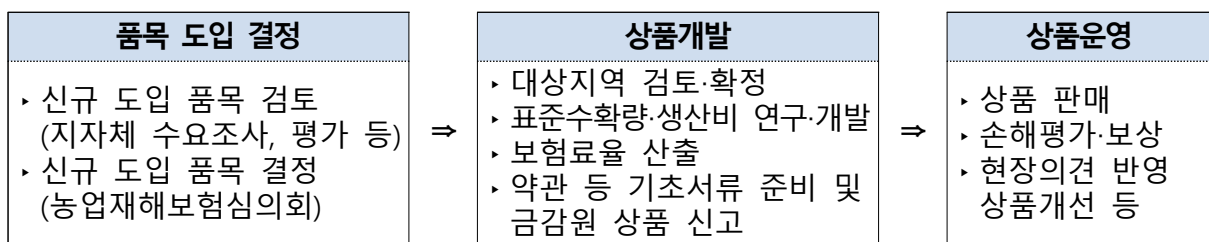
【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도입 절차 】



※ 자료: 농식품부 농업정책관 재해보험정책과 제출자료('24.8.14)

이와 같이 보험상품으로서 특정 품목의 도입이 결정되면 ① 대상 지역 검토·확정, 표준수확량 개발, 보험료율 산정 등 상품개발을 선행한 후 ② 시범사업으로 일부지역에 상품을 판매하고 사고접수 시 손해평가, 보험금 지급 등 상품 운영의 과정을 거쳐 ③ 품목별 개선사항을 검토하고 본사업 전환을 검토하게 됨.

【 농작물재해보험 상품개발 절차 】



※ 자료: 농식품부 농업정책관 재해보험정책과 제출자료('24.8.14)

31) 품목 확대 계획(국정과제 72-3): ('24) 73 → ('25) 76 → ('26) 78 → ('27) 80개

윤준병·문대림·이원택 의원안에 따라 보험목적물 범위 확대 노력 주기를 1년으로 명시할 경우 정부의 보험목적물 확대를 위한 상품개발 등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임.

한편, 박수현의원안에서 보험목적물 확대 노력 시 보험목적물의 품목수 등 보험목적물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함.

현행법에 따르면 보험목적물은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 임산물재해보험의 경우 임산물 및 임업용 시설물, 가축재해보험의 경우 가축 및 축산시설물 등으로 구분됨.

이와 관련하여 현재 보험상품이 운영 중인 품목수는 농작물재해보험 68개, 임산물재해보험 8개, 가축재해보험 16개로 보험목적물 간 품목수에 차이가 있음.

【 보험목적물 품목수(2025) 】

합계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92개	68개	8개	16개

※ 자료: 농식품부 농업정책관 재해보험정책과 제출자료('25.6.14)

다만, 보험상품 품목 선정 시 재배농가수, 재배면적 및 생산액, 가격통계 보유 여부 등 보험화 최소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보험목적물 간 수적 형평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어 보임.

10. 신규 보험상품 개발에 대한 지원근거 명확화 등(안 제27조제1항 및 제28조)

현행법은 재해보험사업자는 신규 보험상품을 ‘도입’하려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정부가 재해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교육·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윤준병·문대림·이원택의원안은 신규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경우에도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명시하고 재해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정부의 교육·홍보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현행	윤준병·문대림·이원택의원안
제27조(시범사업)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신규 보험상품을 도입하려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제27조(시범사업) ① ----- ----- <u>개발하거나 도입하</u> <u>려는</u>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8조(보험가입의 촉진 등) 정부는 농어업인의 재해대비의식을 고양하고 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u>교육·홍보</u> 및 보험가입자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신용보증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28조(보험가입의 촉진 등) ----- ----- ----- <u>교육·홍보를 하여야 하고,</u> ----- ----- -----.

가.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재해보험사업자가 농식품부와 협의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고 재해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의무화도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

나. 검토의견

농식품부는 현재 본사업으로 64개 품목에 대한 보험상품을 운영하고 있고, 12개 품목을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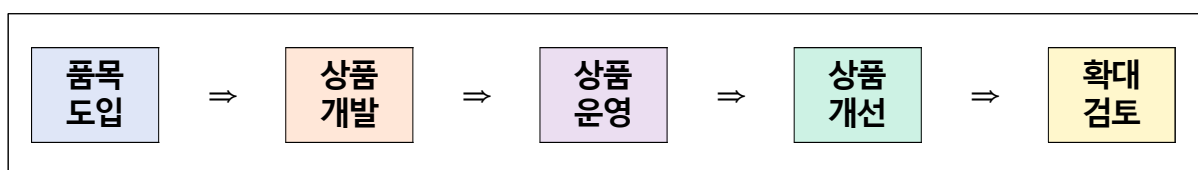
【 농작물재해보험 본사업 및 시범사업 현황 】

구분	품목
본사업	사과, 배, 단감, 감귤, 참다래, 자두, 매실, 포도, 복숭아, 벼, 밀, 감자, 고구마, 콩, 옥수수, 팥, 양파, 마늘, 배추(고랭지), 무(고랭지), 파, 보리, 시금치, 고추, 인삼, 뽕은감, 밤, 대추, 오미자,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양송이버섯, 새송이버섯, 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멜론, 파프리카, 부추, 시금치, 상추, 가지, 파(대파), 무, 백합, 카네이션, 미나리, 쑥갓, 차, 양배추, 단호박, 당근, 호두, 살구
시범사업	복분자, 오디, 무화과, 유자, 메밀, 브로콜리, 배추(월동, 가을, 봄), 무(월동, 가을), 파(쪽파, 싹파), 귀리, 시설감자, 양상추, 블루베리, 두릅, 노지수박

※ 자료: 농식품부 농업정책관 재해보험정책과 제출자료('25.6.14)

보험상품의 개발은 시범사업을 통해 신규 보험상품을 도입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시범사업의 목적에 ‘개발’을 명시하는 것에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임.

【 시범사업 단계 】



또한, 재해보험의 가입 촉진을 위하여 정부에 교육·홍보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재해보험 활성화를 통한 보상 확대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됨.

참고로,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률³²⁾은 2024년 기준 54.2%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최근 10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

(단위: %)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16.1	21.5	27.4	29.7	32.9	38.8	45.0	49.4	49.9	52.0	54.2

※ 자료: 농식품부 농업정책관 재해보험정책과 제출자료('25.6.14)

32) 가입률 추정산식: (보험 가입면적/보험 대상면적*) × 100

* 대상 품목별로 보험 운영 지역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면적

현행법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임의 규정을 두고 있음.

한편, 박수현의원안은 정부가 보험료의 60% 이상을 임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	송옥주의원안	여기구의원안	박수현의원안
제19조(재정지원)	제19조(재정지원)	제19조(재정지원)	제19조(재정지원)
① 정부는 예산	① -----	① -----	① -----
의 범위에서 재	-----	-----	-----
해보험가입자가	-----	-----	-----
부담하는 보험	-----	-----	-----
료의 일부와 재	-----100분의 80	-----100분의 80	-----100분의 60
해보험사업자의	<u>이상을 지원하</u>	<u>이상을 지원하</u>	<u>에 해당하는 금</u>
재해보험의 운	<u>여야 하며,</u> -----	<u>여야 하며,</u> -----	<u>액과</u> -----
영 및 관리에	-----	-----	-----
필요한 비용(이	-----	-----	-----
하 “운영비”라	-----	-----	-----
한다)의 전부 또	-----	-----	-----
는 일부를 지원	-----	-----	-----
할 수 있다. 이	-----	-----	-----
경우 지방자치	-----	-----	-----
단체는 예산의	-----.	-----.	-----.
범위에서 재해	-----	-----	-----
보험가입자가	-----	-----	-----
부담하는 보험	-----	-----	-----

현행	송옥주의원안	여기구의원안	박수현의원안
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 ----- ----- ----- -.	----- ----- <u>100분의 10 이상</u> <u>을-----지원</u> <u>하여야 한다.</u>	----- ----- ----- -----.
② ~ ④ (생략)			

가. 관계 부처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보험료 지원비율 명문화는 지자체 보조를 정부 보조로 대체할 가능성이 커 농가의 보험료 부담률 저하 효과가 낮으며, 타 정책보험 지원비율과의 형평성도 고려하여야 하므로 현행 유지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2) 기획재정부

보험료 지원비율 명문화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과 국고보조율을 매년 예산으로 정하도록 한 것과 충돌되고, 타 정책보험에 대한 국가지원 비율 등 형평성 고려 시 국가 지원비율 상향은 곤란하며, 지원비율 상향 시 가입률이 현재 50% 수준에서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우려³³⁾가 있음.

33)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원비율 70% 가정 시 5년간('25~'29년) 추가재정소요가 약 1조 5,767억원 발생함.

3) 법무부

정책 보험료 지원 등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수혜적 성격의 특성상 사회환경 변화, 예산 상황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일반적으로 구체적 지원 규모나 내용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고 개정안과 같이 재정 지원의 범위를 법률로써 강제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³⁴⁾인 것으로 보임.

또한, 특히 어기구의원안에 따르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자기부담비율은 10% 미만에 불과하여 보험료 납입 부담이 지나치게 적은 경우 도덕적 해이로 이어지거나 혹은 보험회사에 재정적 부담을 가중할 우려가 높음.

4) 행안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지자체의 의무적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사업추진을 어려우며,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현행 임의규정을 유지하여 지방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함.

나. 검토의견

각 개정안은 정부의 보험료 지원비율을 60~80%, 지자체의 보험료 지원 비율을 10%로 각각 규정³⁵⁾하고, 의무 지원 여부에도 차이가 있음.

34) 다른 입법례에서도 지원 범위와 내용은 하위법령에서 구체화하고 있음. 구체적인 내용은 참고 자료3 참조

35) 서삼석의원안은 농어업 형태나 농어업 전체의 경영규모가 일정 기준 이하이거나 전년도 농어업재해로 인한 피해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

【 각 개정안에 따른 의무 지원 비율 】

구분	송옥주의원안	여기구의원안	박수현의원안
의무지원 여부	해당	해당	해당
정부	80% 이상	80% 이상	60% 이상
지자체	-	10% 이상	-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료는 농림축산식품부 내부 지침인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³⁶⁾에서 정부의 50% 보조를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별로 34~45%를 지원하고 있음에 따라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비율은 평균 12.5%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 부담 비율 현황('24) 】

보험료지원			자부담
정부	지자체	합계	
50%	34~45%	86~95%	5~16%(평균 12.6%)

※ 자료: 농식품부 농업정책관 재해보험정책과 제출자료('25.6.14)

가축재해보험의 경우 부담 비율은 정부가 50%, 지자체가 0~50%로, 자부담은 평균 21%로 나타나고 있음.

【 가축재해보험 보험료 부담 비율 현황('24) 】

보험료지원			자부담
정부	지자체	합계	
50%	0~50%	50~100%	0~50%(평균 38.8%)

※ 자료: 농식품부 농업정책관 재해보험정책과 제출자료('26.6.14)

36)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

Ⅱ. 주요내용

3. 지원내용

○ 농작물재해보험 순보험료: 50% 보조

농어업재해보험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 피해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최소한의 안전망 기능을 하고 있음.

개정안은 농어업인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통해 현재 54% 수준인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을 제고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영안정과 재생산 활동을 적극 보장하기 위한 것임.

또한, 국가재정의 보험료 지원 비율을 상향하여 지방재정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재해보험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각 개정안에 따를 경우 정부는 보험료를 기존 50%의 보험료 지원수준을 높여 60~80%까지 지원하게 되는 반면 지자체의 평균 부담 비율이 현행 37.5%보다 낮아지는 효과가 있고, 농어업인의 자부담 비율은 어기구의원안에 따를 경우 10% 이하로 감소하게 됨.

이에 따르면 보험료의 20%까지 자부담하고 있는 농어업인의 경우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이나, 평균 자부담 비율이 12.5%인 점을 고려하면 보험가입자 전반에 대한 보험료 부담 경감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지방재정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재

해보험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음.

다만, 이는 보험료 지원에 대한 국가재정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수반하므로 해당 재원 마련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어이구의원안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에 따르면 5년간 총 5,222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는데, 지방비 부담은 1조 545억원 감소하는 대신 국비 부담이 1조 5,767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어이구의원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

(단위: 억원)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추가재정소요	982	1,010	1,042	1,076	1,113	5,222	1,044
- 국비	3,985	4,287	4,617	4,978	5,373	23,239	4,648
- 지방비	-3,003	-3,276	-3,575	-3,902	-4,260	-18,016	-3,603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

둘째, 보험료 지원 비율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과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³⁷⁾에서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국고보조율을 매년 예산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책보험에 관한 보험료 지원 비율을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 위임하여 규정해온 취지를 고려할 때 적정 지원 비율과 법률상 명시 여부에 대해서는 타 정책보험과의 형평성 문제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3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①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경비의 종류, 국고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정책보험별 보험료 지원 현황 비교 】

정책보험	보험료 지원			자부담
	정부	지자체	합 계	
농작물재해보험	50%	25~50%	75~100%	0~25%
농어업인안전보험 ³⁸⁾	50%	20~40%	70~90%	10~30%
풍수해보험 ³⁹⁾	40.4~67.13%	9~20.4%	50~86.25%	13.75~50%
어선·어선원재해보험 ⁴⁰⁾	15~71%	0~25%	15~96%	6~85%

※ 자료: 농식품부 농업정책관 재해보험정책과 제출자료('25.6.14)

셋째, 일반적으로 적정 수준의 자부담 비율 설정은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데, 여기구의원안에 따라 보험가입자의 자부담 비율이 10% 이하로 감소할 경우 정책적 차원에서 농어가 등의 재해 피해 예방 노력을 유도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점에 대한 고려도 필요해 보임.

38)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 일반·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별 차등 지원

- (일반) 50%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70%

39) 「풍수해보험법」 제7조에 근거, 일반·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별 차등 지원

구분	90%보상형	80%보상형	70%보상형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
정부지원	40.4%(단체가입) 43.5%(개인가입)	48.75%	48.75%	59.25%	67.13%

40)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7조에 근거, 어선규모(10톤, 20톤, 30톤, 50톤, 100톤) 별 차등 지원

구분	~10t	10t~20t	20~30t	30t~50t	50t~100t	100t~
어선(정부)	71%	63%		39%	31%	15%
어선원(정부)	71%	63%	15%			

12. 전담기관의 지정·운영(안 제26조의2 신설)

개정안은 농식품부장관 등이 재해보험사업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사업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재해보험사업 지원 및 평가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함)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전담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현행	송옥주의원안
<신설>	제26조의2(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보험사업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사업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재해보험사업 지원 및 평가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은 재해보험사업 운영 지원 및 평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2조의3에 따른 실태조사 2. 제11조제7항에 따른 손해평가 및 제11조의8에 따른 재평가·이의 신청 결과에 대한 검증조사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관련 정보의 수집·관리 및 제공

현행	송옥주의원안
	4. 그 밖에 재해보험사업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관계 기관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현행법 제25조의2에 따라 현재 농금원이 재해보험사업의 관리, 재해 관련 통계 생산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분석, 손해평가사 제도 운용 관련 업무 등을 위탁받아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중이므로 개정 실익이 없음.

2) 농금원 의견

현재도 농금원이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중이므로 현행과 같이 운영할 필요가 있음.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25조의2는 농식품부장관 등이 재해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

진하기 위하여 ① 재해보험사업의 관리·감독, ② 재해보험 상품의 연구 및 보급, ③ 재해 관련 통계 생산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해당 업무를 농금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농금원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3조의2에 따라 ① 농어업재해보험기금 및 재보험사업의 관리, ② 농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 및 손해평가사 제도의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⁴¹⁾임.

【 농금원의 사업 범위 관련 규정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5조의2(농어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해보험사업의 관리·감독
2. 재해보험 상품의 연구 및 보급
3. 재해 관련 통계 생산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분석
4. 손해평가인력의 육성
5. 손해평가기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재해보험사업의 약정 체결 관련 업무
3. 제11조의2에 따른 손해평가사 제도 운용 관련 업무
4. 그 밖에 재해보험사업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3조의2(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설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63조제2항에 따른 농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융자금·보조금 등 농업 정책자금의 운용·관리 및 감독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

4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기타공공기관에 해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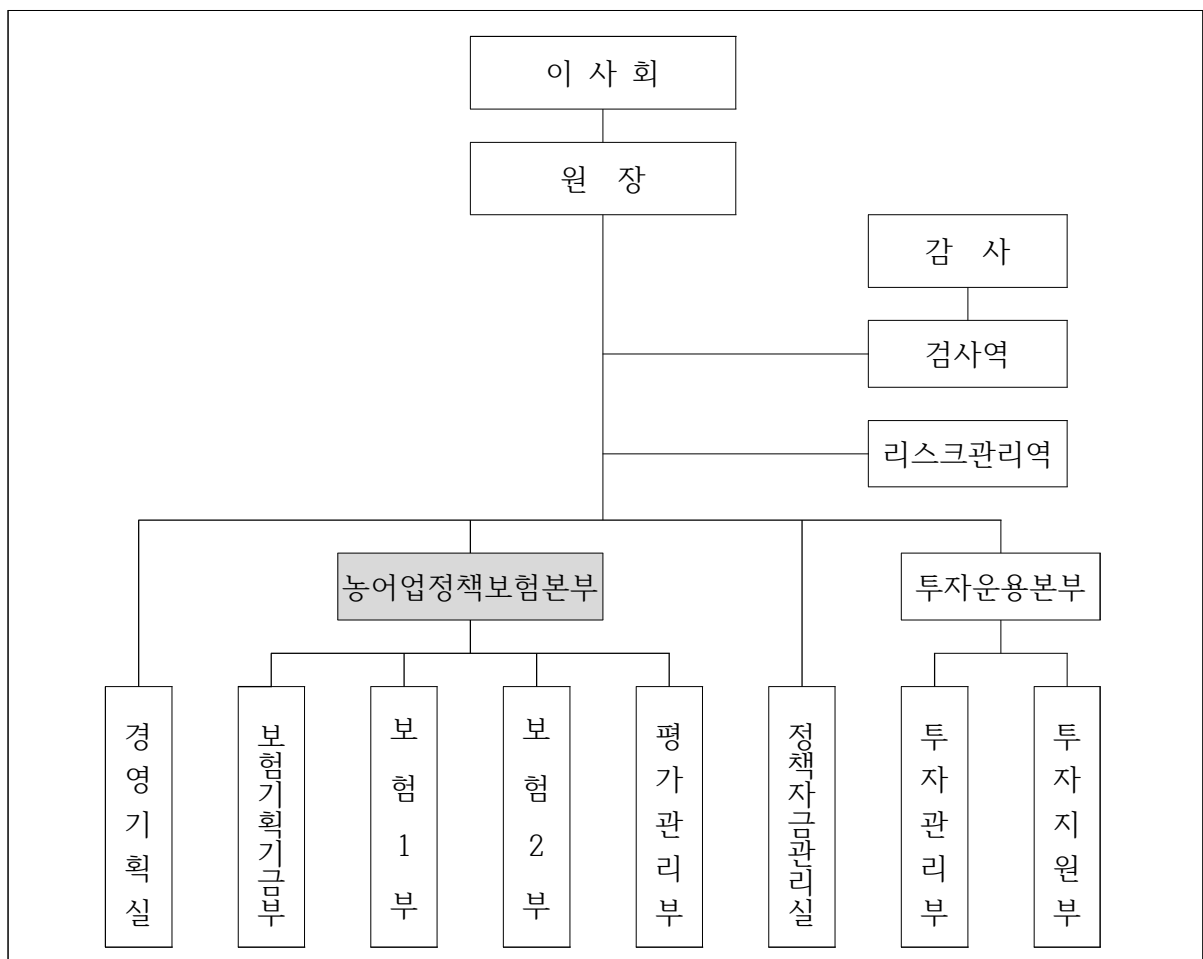
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 ③ (생 략)

④ 농금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제63조제2항에 따른 농업 정책자금의 운용·관리 및 감독업무 등
2.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융자금의 운용·관리 업무
3. 농어업재해보험기금 및 재보험사업의 관리
4. 농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 및 손해평가사 제도의 운영<후 략>

【 농금원 조직도 】



※ 자료: 22대 개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편람(2024), p.227

개정안은 재해보험사업 지원 및 평가 업무를 전담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려는 취

지로 이해됨.

다만, 현재도 농금원이 법률에 근거하여 재해보험사업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중에 있음을 고려할 때 전담기관의 지정 근거를 별도로 마련하는 것은 개정 실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안 제26조의2제1항)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금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3년에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으로서 정부출연연구기관⁴²⁾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별도의 전담기관을 지정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임.

【 농금원 연혁 】

- 2004. 5. 재단법인 「농업정책자금관리단」 설립
(설립등기일 : 2004.5.20.)
- 2005. 6. 농어업재해보험기금 관리·운용업무 수탁
- 2010. 6. 농식품모태펀드 투자관리전문기관 지정
- 2013.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공공기관 지정
- 2014. 9. 재단법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 기관명칭 변경
- 2015. 1. 농업재해보험사업 관리업무 수탁
- 2015. 8. 특수법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 전환
(설립등기일 : 2015.9.17.)
- 2016. 2. 농업인안전재해보험사업 관리업무 수탁

4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정부가 출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 2018. 1. 농업재해보험통계 생산·관리업무 수탁
- 2020. 3.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기관 지정
- 2021. 7.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 관리업무 수탁
양식수산물재해보험통계 생산·관리업무 수탁
- 2023. 1.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기관 재지정

13. 부칙

윤준병의원안은 시행일을 공포 후 1년, 다른 5건의 개정안은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윤준병의원안	문대림·송옥주·어기구·이원택·박수현의원안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앞서 검토한 일부 조항에서 세부사항을 시행령이나 농식품부장관에게 위임한 경우가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규정하여 하위 법령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주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하위 법령 위임 규정 】

구분	개정안 내용	하위 법령 위임
실태조사 (안 제2조의3 신설)	기본계획·시행계획의 효과적 수립 등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실태조사 내용·시기·방법 등 시행령 위임
심의회 심의절차 (안 제3조제7항)	농림축산업인단체 등 의견 청취 의무화	의견 청취 절차 농식품부장관에게 위임

참고로, 지난 2024년 11월 21일 우리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된 「농어업 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서는 시행일을 6개월로 규정한 바 있었음.

문 의 처
02)6788-5415

참 고 자 료

참고 1

최근 2년 농업재해 발생현황

□ 2024년

재해명	피해개요	피해내역
대설·한파 (1.22.~24.)	제주지역 대설·한파로 월동채소 언피해, 가축 폐사 등 피해 발생 * 피해 농가수: 707호	■ 농작물 732.9ha * 월동무 714.1, 브로콜리 3.8, 배추 2.7, 양배추 2.6 등 ■ 가축폐사 말 6마리, 꿀벌 5,158군 ■ 농업시설 0.03ha(축사)
호우 (2.18.~20.)	전남지역 집중호우로 인한 맥류, 채소류 침수 등 피해 발생 * 피해 농가수: 1,169호	■ 농작물 2,147.3ha * 보리 1,170.6, 귀리 459.9, 밀 203.9, 양파 103.6 등
대설 (2.20.~22.)	강원지역 대설로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등 농업시설 파손 피해 발생 * 피해 농가수: 110호	■ 농업시설 9.6ha * 인삼시설 5.9, 비닐하우스 2.9, 과수시설 0.5 등
일조량 부족 (‘23.12월~’24.2월)	겨울철 잦은 강우 등 흐린 날씨로 인한 일조량 부족으로 12개 사·도(경북, 경남, 전남, 충남, 전북, 제주, 광주, 충북, 대구, 대전, 부산, 세종)에서 농작물 생육불량 등 피해 발생 * 피해 농가수: 20,022호	■ 농작물 9,606.2ha * 딸기 2,521.3, 참외 1,990.8, 수박 852.8, 방울토마토 549.7, 토마토 530.7, 고추 438.3, 애호박 352.3 등

* 5월 호우·우박, 마늘 이차생장 등 현재 복구계획 수립 중이며, 7월 호우는 피해조사 진행중

□ 2023년

재해명	피해개요	피해내역
한파 (1.24.~28.)	제주지역 한파로 월동채소 등 언피해 발생 * 피해 농가수: 3,055호	■ 농작물 4,704ha * 월동무 3,510, 양배추 291, 브로콜리 270, 콜라비 122, 등 ■ 가축폐사 1,501마리*, 꿀벌 5,129군 * 닭 1,500마리, 말 1마리
대설	경남지역 대설로 비닐하우스·과수시설 파손	■ 농업시설 30ha

재해명	피해개요	피해내역
(2.9.~10.)	등 피해 발생 * 피해 농가수: 101호	* 비닐하우스 1, 안삼시설 12, 과수시설 28 등 ■ 농작물 5.4ha * 복숭아 2.5, 블루베리 2.3, 체리 0.3, 딸기 0.2 등
이상저온 (3~4월)	4월 냉해로 14개 시·도(경북, 전남, 충북, 전북, 충남, 경남, 경기, 강원, 세종, 울산, 대구, 대전, 광주, 부산) 139개 시·군·구 과수 꽃눈 고사 등 피해 발생 * 피해 농가수: 76,652호	■ 농작물 44,765ha * 사과 18,807, 배 6,427, 복숭아 5,332, 자두 3,342, 양파 2,433, 포도 1,537, 매실 1,032, 단감 405, 감자 335, 유자 312, 인삼 258, 고추 165 등
호우·강풍 (5.4~6. 및 5.28~30)	호우·강풍으로 5개 시·도(충남, 전북, 전남, 광주, 제주)에서 농작물 침수, 도복, 잎·줄기 꺾임 등 피해 발생 * 피해 농가수: 8,119호	■ 농작물 8,057ha * 보리 2,749, 밀 1,511, 귀리 976, 기장 651, 메밀 565, 감자 453, 마늘 185, 단호박 182, 콩 110 등 ■ 꿀벌 7군 ■ 농경지 0.9ha
우박·강풍 (6.8~15)	7개 도(경북, 충북, 강원, 전북, 경남, 경기, 전남)에서 우박·호우·강풍으로 사과 흠집, 잎 파열 등 피해 발생 * 피해 농가수: 9,460호	■ 농작물 5,150ha * 사과 2,766, 복숭아 396, 고추 329, 자두 201, 포도 189, 배 129, 배추 115, 옥수수 99, 참깨 75, 담배 74, 수박 64, 감자 63, 콩 58, 오이 34 등 ■ 농업시설 1.5ha * 비닐하우스 02, 안삼시설 12, 축산 0.1 등 ■ 농경지 0.3ha
호우 (6.27~7.27) 및 태풍 카눈	16개 시·도에서 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 침수, 과수 낙과, 가축 폐사, 비닐하우스, 수리시설 등 피해 발생 * 피해 농가수: 107,078호	■ 농작물 71,416ha * 벼 37,317, 콩 14,661, 고추 1,949, 대파 1,891, 복숭아 1,616, 사과 1,333, 참깨 1,128, 수박 1,032, 옥수수 729, 상추 477, 감자 366, 멜론 268, 배 243, 단호박 228, 고구마 148, 토마토 98 등 ■ 농업시설 269ha * 비닐하우스 92, 양파시설 72, 과수시설 68, 안삼시설 31, 축산시설 5 등 ■ 가축폐사 913천마리*, 꿀벌 13천군, 기타 곤충 43천kg

재해명	피해개요	피해내역
		* 닭 852,808마리, 소 826, 돼지 3,867 등 ■ 농경지 1,490ha ■ 공공시설 243개소
호우 (9.15~17, 9.20~21) 및 우박 (10.14, 26)	7개 도(경남, 충남, 제주, 전남, 경북, 충 북, 강원)에서 호우와 우박으로 인한 농작물 침수, 과수 낙과·흠집, 벼 도 복 등 피해 발생 * 피해 농가수: 22,986호	■ 농작물 6,697ha * 단감 2,404, 사과 2,218, 벼 1,187, 채소류 673 등 ■ 농업시설 0.1ha ■ 농경지 1.5ha
우박(11.17)	제주에 우박이 내려 감귤 낙과·흠집, 쪽 파 꺾임 피해 * 피해 농가수: 145호	■ 농작물 43.9ha * 감귤 42.4, 쪽파 1.5
대설·한파 (12.20~22)	대설·한파로 인한 4개도(전남, 전북, 제주, 충남) 양파, 대파, 무 등 농작물 언피해 및 농업시설 파손 * 피해 농가수: 2,189호	■ 농작물 972.6ha * 양파 597.2, 대파 272.9, 무 70.2 등 ■ 농업시설 22.8ha * 비닐하우스 20.5, 축산시설 1.9, 과수시설 0.4

※ 자료: 농식품부 농업정책관 재해보험정책과 제출자료('24.8.14)

참고 2

재해의 범위

□ 농어업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시행령 별표 1)

재해보험의 종류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
1. 농작물·임산물 재해보험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 및 보험목적물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병충해
2. 가축 재해보험	자연재해, 화재 및 보험목적물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
3.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자연재해, 화재 및 보험목적물별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질병

□ 농업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별 보상하는 병충해 및 질병규정(농식품부 고시 별표 1)

보험 종류	보험 목적물	구분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	비고
농작물 재해보험	벼	병해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도열병, 깨씨무늬병, 세균성벼알마름병	
		충해	벼멸구, 먹노린재	
	감자	병충해	감자에 관하여 발생하는 모든 병·해충	
	고추	병충해	고추에 관하여 발생하는 모든 병·해충	
	복숭아	병해	세균구멍병	
가축 재해보험	소·사슴·양 및 말	질병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가축전염병을 제외한 모든 질병	폐사하는 경우에 한함 (다만, 질병에는 부상(사지골절, 경추골절, 탈골 등)·난산·산욕마비(말의 경우 산통 포함), 씨수말 번식 첫해 선천성불임, 정액생산용수소의 정액생산능력저하로 인하여 폐사 또는 즉시 도살하는 경우 등도 포함)
	돼지	질병	TGE, PED, Rota	폐사하는 경우에 한함
	꿀벌	질병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가축전염병을 제외한 모든 질병(단, 부저병 및 낭충봉아부패병은 보상하는 재해 포함)	폐사하는 경우에 한함

참고 3

재정지원 입법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41조(재정지원)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환경관리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환경책임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자의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9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재정지원) ①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재정지원) ① 국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업인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경우 농어업인의 경영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6조제2항에 따른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보험계약을 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제7조(국가 등의 재정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보험목적물에 실제 거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하려는 보험목적물이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3조(재정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귀속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어선안전조업법	제26조(재정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선의 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료: 법무부